

국가회계 재정통계

2020년 2분기

Vol. 23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국가회계 동향

- 제27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2분기 정례회의 안건 분석
- 제2회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리서치 포럼 온라인 개최
-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11월 개최 안내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19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 제출
- 2020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7~10월)

| 재정통계 동향

- 2019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 발간
- 2019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분석
- 「2020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 공익법인회계 동향

-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발간
-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정책토론회

| 오피니언

- 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공무원연금의 IPSAS 42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특집

- [해외공동 연구] 일본 공적연금 회계제도
- 코로나19 관련 회계처리: IPSASB 방향 제시

| 센터동향

-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이용 활성화방안」 중간보고
-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중간보고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중간보고
- 공공기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간담회

| 공지사항

- 뉴스레터 구독 안내
-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정통계

2020년 2분기

Vol. 23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01. 국가회계 동향	2
① 제27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2
②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2분기 정례회의 안건 분석	4
③ 제2회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리서치 포럼 온라인 개최	15
④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9
⑤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11월 개최 안내	22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3
① 2019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 제출	23
② 2020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7~10월)	26
03. 재정통계 동향	29
① 2019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29
②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 발간	31
③ 2019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분석	38
④ 「2020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49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50
①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발간	50
②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정책토론회	51
05. 오피니언	56
① 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공무원연금의 IPSAS 42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56
06. 특집	60
① [해외공동 연구] 일본 공적연금 회계제도	60
② 코로나19 관련 회계처리: IPSASB 방향 제시	75
07. 센터동향	85
①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이용 활성화방안」 중간보고	85
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86
③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중간보고	87
④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중간보고	88
⑤ 공공기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간담회	89
08. 공지사항	90
① 뉴스레터 구독 안내	90
② 홈페이지 이용 안내	90

01

국가회계 동향

1 제27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6월 29일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10층 회의실에서 제27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가회계자문위원회는 국가회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이며, 국내 민간위원 8명 및 해외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7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는 김완희 위원장(센터 소장)의 주재로 국내 민간위원 7인과 더불어 지현미 교수(계명대), 박세환 상임위원(한국회계기준원)이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국가회계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 국내위원(8):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동욱(제주대학교 교수),
이아영(강원대학교 교수), 최연식(경희대학교 교수),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회장)
심태섭(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영진(계명대학교 교수), 배원기(홍익대학교 교수)
- 해외위원(3): Ian Ball(공공부문화계사협회 국제부문 회장)
Andreas Bergmann(스위스 취리히 응용과학대학교 교수),
Delphine Moretti(OECD 공공예산정책국 선임정책분석관)

이번 제27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보고」 및 「2020년도 국가회계사업 추진 경과 보고」, 「IPSASB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계획 보고」 등 3개의 보고 안건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영문 초안 등 1개의 논의 안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 (안건1)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보고

(안건2) 2020년도 국가회계 사업 계획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보고로 추진 경과, 주요 내용 및 주요 변동 원인 등이 보고되었으며, 2020년도 국가회계사업 계획으로 국가회계팀의 국가회계기준 등 제·개정 계획, 국가회계제도 프로젝트, 국제협력업무 등과 결산교육팀의 결산업무 및 교육업무 계획을 보고하였다.

나. (안건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영문 초안 검토

센터는 국가회계기준의 국제적인 비교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nforcement Rule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의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영문 초안의 회계적 정확성 및 가독성을 위해 국내 자문위원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향후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 (안건4) IPSASB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계획 보고

IPSASB는 공개초안 ED 70, ‘수행 의무가 있는 수익’,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ED 72, ‘이전비용’을 2020년 2월 21일에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센터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반영한 의견서를 IPSASB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익과 이전비용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공개초안 의견서 제출을 위해 자문위원회에 공개초안에 대한 개요 및 의견 요청 사항(SMC)을 보고하였다.

「IPSASB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계획 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1. 국가회계동향 - ④ 국제공공부 문화회계기준위원회(IPSASB),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2분기 정례회의 안건 분석

아래는 이번 2019년 12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의 내용과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안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PSASB 웹페이지 (<https://www.ipsasb.org/meetings/ipsasb-meeting-abu-dhabi-united-arab-emirat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안건
가. 리스	안건 4, 안건 12: 리스(Lease)
나. 개념체계	안건 6: 개념체계 일부 개정 (Limited Scope Update of Conceptual Framework)
다. 측정	안건 7: 측정(Measurement)
라. 측정, 유산, 사회기반시설 자산	안건 8: ED 76, '유형자산 개정'(ED 76, 'IPSAS 17' Update)
마. 사회기반시설 자산	안건 9: 사회기반시설 자산(Infrastructure assets)
바. 유산	안건 10: 유산(Heritage)
사.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안건 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Accounting for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가. 리스 (Leases)

□ 배경 및 목적

- (배경) IFRS 16과의 정합성 제고 및 할인리스 관련 지침 미비
 - 2016년 1월에 발표된 IFRS 16, '리스'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IPSAS 13, '리스'의 개정 소요 발생
 - 공공부문 특유 이슈인 '할인리스(concessionary leases)'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 미비
- (목적) IPSAS 13, '리스'를 대체할 신규 리스 기준서 개발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3, '리스' 결론도출근거(안)에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 및 과거 논의이력 포함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사항) 리스 프로젝트의 방향을 'IFRS 16 정합성 제고(alignment)'로 전환하고, 할인리스 등 공공부문 특유의 이슈 검토는 2단계에서 추진하며,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요구함
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3, '리스'는 'IFRS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환됨에 따라 IFRS 16, '리스'를 바탕으로 ED 73의 목차 및 지침을 개발함
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특유의 이슈와 관련한 정보요청서(RFI)의 구조 검토 (정보요청서 작성 목적) IPSASB 이해관계자에게 각국의 리스 회계처리 이슈 및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활용) 2단계 리스 프로젝트 진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 2020년 9월 회의에 정보요청서 초안을 상정할 예정,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추진
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 관련 정보요청서에 포함될 질문 유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이 정보요청서에 표시된 리스 관련 회계처리 이슈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b) 이 정보요청서에 표시된 이슈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 또 그 근거는? (c) 그 밖에 다른 유형의 리스 관련 회계처리 이슈와 그 해결방법을 설명할 것

나. 개념체계 일부 개정 (Conceptual Framework-Limited Scope Update)

□ 배경 및 목적

- (배경) 2014년 공공부문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발표 이후 개정이 요구됨
 - 개정된 IFRS의 개념체계를 검토하여 그 영향을 IPSAS 개념체계에 반영
 - 새로운 IPSAS 기준의 개발 및 2014년 9월 이후 발표된 IPSAS 기준서 활용에 적합한 개념체계 필요
- (목적) 일부 이슈에 대한 개념체계를 수정하는 것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0년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6.2.1	• 2분기 개념체계(CF) 주요 안건 요약		
6.2.2	• 개념체계 '제7장 측정의 서열체계(Measurement Hierarchy)' 개정 승인		
	• IASB의 개념체계의 측정 서열체계를 반영하여 IPSASB 개념체계에 도입		
	단계	분류	비고 (IASB)
	1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s)	측정기준의 분류
2	측정기준(Measurement Bases)	측정기준	
3	측정기법(Measurement Techniques)	측정기법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모델: 자산 또는 부채의 표시에 대한 접근법으로, 역사적원가 측정모델(historical cost model)과 현행가치 측정모델(current value model)로 이루어짐 * 측정기준: 선택된 측정모델에 따라 가장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대표되는 정보를 제공 * 측정기법: 선택된 측정기준에 따라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을 추정하는 방법 																													
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가치(Market Value)의 경우 측정기준이 아닌 측정기법으로 제안, IFRS와 측정기준 측면의 정합성이 제고됨 - 시장가치와 공정가치를 모두 측정기준으로 정의할 경우 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것이며, 다수의 응답자들은 IFRS 13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으로 규정할 것을 지지하였음 																													
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기준으로 규정될 항목으로 역사적원가, 공정가치, 이행가치, 현행원가 제시 <table border="1" data-bbox="342 751 1249 1115"> <thead> <tr> <th data-bbox="342 751 429 791">구분</th> <th data-bbox="429 751 703 791">현행 IASB CF</th> <th data-bbox="703 751 974 791">현행 IPSASB CF</th> <th data-bbox="974 751 1249 791">제안 IPSASB 측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2 791 429 836" rowspan="8">측정 기준</td> <td data-bbox="429 791 703 836">역사적원가(자산, 부채)</td> <td data-bbox="703 791 974 836">역사적원가(자산, 부채)</td> <td data-bbox="974 791 1249 836">역사적원가(자산, 부채)</td> </tr> <tr> <td data-bbox="429 836 703 882">공정가치(자산, 부채)</td> <td data-bbox="703 836 974 882">시장가치(자산, 부채)</td> <td data-bbox="974 836 1249 882">공정가치(자산, 부채)</td> </tr> <tr> <td data-bbox="429 882 703 928">현행원가(자산)</td> <td data-bbox="703 882 974 928">대체원가(자산)</td> <td data-bbox="974 882 1249 928">현행원가(자산, 부채)</td> </tr> <tr> <td data-bbox="429 928 703 974">사용가치(자산)</td> <td data-bbox="703 928 974 974">사용가치(자산)</td> <td data-bbox="974 928 1249 974">-</td> </tr> <tr> <td data-bbox="429 974 703 1019">이행가치(부채)</td> <td data-bbox="703 974 974 1019">이행원가(부채)*</td> <td data-bbox="974 974 1249 1019">이행가치(부채)</td> </tr> <tr> <td data-bbox="429 1019 703 1065">-</td> <td data-bbox="703 1019 974 1065">순판매가격(자산)*</td> <td data-bbox="974 1019 1249 1065">-</td> </tr> <tr> <td data-bbox="429 1065 703 1111">-</td> <td data-bbox="703 1065 974 1111">해제원가(부채)*</td> <td data-bbox="974 1065 1249 1111">-</td> </tr> <tr> <td data-bbox="429 1111 703 1157">-</td> <td data-bbox="703 1111 974 1157">인수가격(부채)**</td> <td data-bbox="974 1111 1249 1157">-</td> </tr> </tbody> </table> <p data-bbox="342 1129 1249 1228"> * 2020년 9월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 Staff는 실제 특유의 가정을 반영하는 측정기준이므로 공공부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p>	구분	현행 IASB CF	현행 IPSASB CF	제안 IPSASB 측정기준	측정 기준	역사적원가(자산, 부채)	역사적원가(자산, 부채)	역사적원가(자산, 부채)	공정가치(자산, 부채)	시장가치(자산, 부채)	공정가치(자산, 부채)	현행원가(자산)	대체원가(자산)	현행원가(자산, 부채)	사용가치(자산)	사용가치(자산)	-	이행가치(부채)	이행원가(부채)*	이행가치(부채)	-	순판매가격(자산)*	-	-	해제원가(부채)*	-	-	인수가격(부채)**	-
구분	현행 IASB CF	현행 IPSASB CF	제안 IPSASB 측정기준																											
측정 기준	역사적원가(자산, 부채)	역사적원가(자산, 부채)	역사적원가(자산, 부채)																											
	공정가치(자산, 부채)	시장가치(자산, 부채)	공정가치(자산, 부채)																											
	현행원가(자산)	대체원가(자산)	현행원가(자산, 부채)																											
	사용가치(자산)	사용가치(자산)	-																											
	이행가치(부채)	이행원가(부채)*	이행가치(부채)																											
	-	순판매가격(자산)*	-																											
	-	해제원가(부채)*	-																											
	-	인수가격(부채)**	-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원가를 측정기준이 아닌 측정기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 대체원가는 자산·부채의 화폐적 정보, 양적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측정기준이 아니라 측정기법에 해당함 																													
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가치를 측정기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 현금창출 자산의 경우 사용가치는 측정기법에 해당함. 비현금창출 자산의 경우 측정기준이나 측정기법에 해당하지 않음 																													
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가치평가기준(IVS)에 규정된 합성가치(Synergistic Value)와 공정가치(Equitable Value)는 측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입가치(Entry Value)와 유출가치(Exit Value) 개념의 구분 필요성 • 유입가치와 유출가치 구분은 측정기준 선택에서 불필요하지만, 거래원가 처리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념체계에 수록되어야 함 																													

다. 측정 (Measurement)

□ 배경 및 목적

- (배경) 공공부문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와 개별 기준서의 측정 규정의 일관성이 요구됨
- (목적) 공공부문 자산·부채의 측정기준과 측정방법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준서의 개발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7.2.1	• 개념체계와 측정 이슈 개관
7.2.2	• 개념체계에는 측정모델과 측정기준을 수록할 것 • ED 75, '측정'에는 측정기준과 측정기법을 수록할 것 • 개별 기준서에는 해당 기준서에 특정된 측정기준 내용을 수록할 것
7.2.3	• 현재 IPSAS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공정가치와 IFRS 13의 공정가치의 일치 여부 분석
7.2.4	• 공정가치 측정기준의 지침 개선
7.2.5	• 이행가치 측정기준의 지침 개선
7.2.6	• 역사적원가 측정기준의 지침 개선
7.2.7	• 대체원가의 지침 개선
7.2.8	• IPSAS 5, '차입원가'의 개선 • 거래원가(transaction costs)와 차입원가(borrowing costs)를 구분하는 지침(적용지침) 추가 • 적용사례(IE), 실무적용지침(IG)을 통해 중앙집권적 차입(centralized borrowing), 일반목적 차입(general borrowing) 관련 내용을 규정할 것

라. ED 76, '유형자산 개정'(ED 76, IPSAS 17 Update)

□ 배경 및 목적

- (배경) 측정, 사회기반시설 자산, 유산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유형자산 기준서 개정이 요구됨
 - 사회기반시설 자산 및 유산자산이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 충족 시 유형자산 기준서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프로젝트 간 통합적 개발 및 최종적으로 ED 76, '유형자산'이 도출될 예정
 - ED 75, '측정'에서 일반적인 측정기준을 다룰 예정이므로 유형자산 기준서의 측정 부분 수정 필요
- (목적) 측정, 사회기반시설 자산, 유산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유형자산 기준서 개정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0년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 사회기반시설 자산은 유형자산의 하위항목으로서, 유형자산 기준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통합되어야 함 			
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IPSAS 17, '유형자산' 기준서 내용 중 측정 관련 일반 지침은 ED 75, '측정'으로 이동 • 유형자산 기준서에 특정된 측정 관련 지침은 ED 76, '유형자산'에 추가 			
	분류	내용	기존 기준서 문단	ED 76 문단
	삭제	최초측정(원가의 요소)	30-31	N/A
		최초측정(원가의 요소)	34-35	N/A
최초측정(원가의 측정)		37-41	N/A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분류	내용	기존 기준서 문단	ED 76 문단	
8.2.2	삭제	후속측정(재평가모형)	45-48	N/A	
		감가상각(감가상각 대상 금액과 기간)	66-67	N/A	
		감가상각(감가상각 대상 금액과 기간)	69-73	N/A	
		감가상각(감가상각 방법)	76-78A	N/A	
	추가	분류		N/A	19-22, AG8-AG12
		최초측정(원가의 요소)		N/A	26
		결론도출근거(측정기준의 선택)		N/A	BC32-34
		실무적용지침 (사회기반시설, 유산자산의 측정 규정)		N/A	IG11-IG24
		적용사례(복합자산의 재평가모형)		N/A	IE8-IE12
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6, '유형자산' 은 IPSAS 41, '금융상품'의 구조를 토대로 개발할 것 ED 76의 구조는 본문(Core text), 적용지침(Application Guidance), 결론도출근거(Basis for Conclusions), 적용사례(Illustrative Examples), 실무적용지침(Implementation Guidance)으로 구성되어야 함 				

마. 사회기반시설 자산(Infrastructure Assets)

□ 배경 및 목적

- (배경) 사회기반시설 자산에 관한 IPSAS 17, '유형자산'의 지침 보완 필요
- (목적) 사회기반시설 자산에 관한 지침을 추가하여 IPSAS 17, '유형자산'을 개정하는 것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사회기반시설 자산 및 유산자산의 주요 안건 요약 - 사회기반시설 자산 및 유산자산의 특징, 통제 관련 이슈 등 																							
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유형자산과 구별되는 사회기반시설 자산만의 특징 식별(GFS 등 참고) - 여러 자산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긴 내용연수, 이동 불가능성 • 현재 IPSAS 17, '유형자산'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징에 대한 추가 지침 제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특징</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내용</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추가 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네트워크 또는 시스템</td> <td>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댐, 상하수도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 회계처리 검토 • 손상 - 실무적용지침 • 후속원가 - 실무적용지침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하위 시스템</td> <td>네트워크의 하위시스템으로서, 네트워크 자산의 유사한 부분 자산으로 구성 (도로 - 다리, 신호체계시스템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긴 내용연수</td> <td> (1) 지속적인 대체와 수선유지활동으로 인해 서비스 잠재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 (2) 정기적인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일반 유형자산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보존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가 한정된 하위자산 - 실무적용지침 (별도 상각 고려)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이동 불가능성</td> <td>설치, 개발된 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할 수 없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제한 - 실무적용지침 (측정 이슈 구체화)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특화된 특성</td> <td>대체적 용도가 없음</td> <td></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처분의 제한</td> <td>판매할 경우보다 사용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활성시장은 존재하지 않음</td> <td></td> </tr> </tbody> </table>			특징	내용	추가 지침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댐, 상하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 회계처리 검토 • 손상 - 실무적용지침 • 후속원가 - 실무적용지침 	하위 시스템	네트워크의 하위시스템으로서, 네트워크 자산의 유사한 부분 자산으로 구성 (도로 - 다리, 신호체계시스템 등)	-	긴 내용연수	(1) 지속적인 대체와 수선유지활동으로 인해 서비스 잠재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 (2) 정기적인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일반 유형자산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가 한정된 하위자산 - 실무적용지침 (별도 상각 고려) 	이동 불가능성	설치, 개발된 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제한 - 실무적용지침 (측정 이슈 구체화) 	특화된 특성	대체적 용도가 없음		처분의 제한	판매할 경우보다 사용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활성시장은 존재하지 않음	
특징	내용	추가 지침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댐, 상하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 회계처리 검토 • 손상 - 실무적용지침 • 후속원가 - 실무적용지침 																						
하위 시스템	네트워크의 하위시스템으로서, 네트워크 자산의 유사한 부분 자산으로 구성 (도로 - 다리, 신호체계시스템 등)	-																						
긴 내용연수	(1) 지속적인 대체와 수선유지활동으로 인해 서비스 잠재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 (2) 정기적인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일반 유형자산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가 한정된 하위자산 - 실무적용지침 (별도 상각 고려) 																						
이동 불가능성	설치, 개발된 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제한 - 실무적용지침 (측정 이슈 구체화) 																						
특화된 특성	대체적 용도가 없음																							
처분의 제한	판매할 경우보다 사용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활성시장은 존재하지 않음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유형자산과 구별되는 유산자산만의 특징 식별 - 처분 등의 제한, 대체 불가능성, 무한한 내용연수 • 유산자산의 특징 중 현재 IPSAS 17 규정 적용이 어려운 특징에 대한 추가 지침 제안 																							
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 자산 및 유산자산의 특징과 관련된 지침은 적용지침(AG)에 수록되어야 함 																							

바. 유산(Heritage)

□ 배경 및 목적

- (배경) 공공부문의 유산(Heritage)에 관한 재무보고 지침 미비
 - 2017년 3월 자문보고서, ‘공공부문의 유산에 관한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 for Heritage in the Public Sector)’ 발간
 - 유산자산의 측정 관련 이슈는 공공부문측정 프로젝트에 편입되고, 유산자산은 IPSAS 17, ‘유형 자산’의 규정 적용 대상으로 결정
- (목적) 유산자산을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침 제공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사회기반시설 자산 및 유산자산의 주요 안건 요약 - 사회기반시설 자산 및 유산자산의 특징, 통제 관련 이슈 등
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17, ‘유형자산’의 적용 범위에서 유산자산을 제외하는 규정 삭제 - 2017년 자문보고서 및 기타 논의를 거쳐 IPSASB가 유산자산이 유형자산의 범위에 포함 된다고 결정
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 이슈는 사회기반시설 자산 및 유산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기준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IPSAS 17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a) 본문 - 유형자산의 정의에 “실체가 통제하는(Controlled by an Entity)” 문구 및 통제의 원칙 추가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10.2.3	(b) 적용지침(AG) - 통제의 일반 원칙에 대한 명료하고 확대적인 설명 추가
	통제 요건(AG5)
	(1) 법적 소유권 (2)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 혹은 다른 실체가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권한 (3) 자원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수단 (4) 자원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혹은 서비스 잠재력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
	(c) 결론도출근거(BC) - 통제 관련 추가 지침 신설에 대한 IPSASB 의결사항 추가

사. 매각예정비유동자산(Accounting for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 배경 및 목적

- (배경) 현재 IPSAS 기준서 중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관한 기준서 및 회계처리 지침의 부재
- (목적)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대응하는 IPSAS 기준서를 개발하여 공공 부문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0년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여유자산'의 경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검토 - 여유자산의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여유자산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제안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실체 간 비교환거래 형식으로 이전된 비유동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검토 - 비교환거래 이전은 매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환거래 형식으로 이전된 비유동자산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제안
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40, '공공부문 결합'과 ED 77,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연관성 검토 - IPSAS 40과 ED 77의 연관성은 없음
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 검토 - IFRS 5와 동일하게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결론 제시
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판매가격을 대체적인 측정 기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검토 - 순판매가격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 제시
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프로젝트명 검토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이 적절한 프로젝트명이라는 결론 제시
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개요(Project Brief) 승인 여부

3 제2회 국제공공부회계기준위원회(IPSASB) 리서치 포럼 온라인 개최

IPSASB는 6월 17일에 제2회 IPSASB 리서치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IPSASB 리서치 포럼은 IPSASB 관계자와 각국의 기준 제정자가 학계와 만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부회계기준 및 재무보고와 관련된 잠재적인 프로젝트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19년 9월 17일에 최초로 개최된 바 있다. IPSASB는 리서치 포럼의 개최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2회 리서치 포럼을 국제비교정부회계연구회(CIGAR)¹⁾ 워크숍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IPSASB 위원장 Ian Carruthers, CIGAR 위원장 Susana Jorge의 환영사와 IPSASB 학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Andreas Bergmann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제2회 IPSASB 리서치 포럼에서는 총 4종의 논문이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되었다. 당해 논문들은 IPSASB가 지난 해 12월 말일까지 모집한 논문 중 블라인드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된 초안이며, 최종 논문은 올해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IPSASB는 상기 논문의 연구 결과를 IPSASB의 2021년 업무계획 자문(2021 work program consultation)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션	발표 논문
[1세션] 공공부문의 재무제표 표시 (Present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 Users and Commitments to Knowledge Templates in Public Sector Standard Setting: The Case of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저자) Annemarie Conrath-Hargreaves, Sonja Wüstemann •(토론자) Fabienne Colignon, Eugenio Anessi Pessina •(제목) Other Comprehensive Income: Can it be Introduced in the Public Sector?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저자) Laurence Morgana •(토론자) John Stanford, Frans van Schaik
[2세션] 할인율과 차등 보고 (Discount Rates and Differential Repor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 Public Pension Governance and Opportunistic Accounting Choice: A Politico-economic Approach •(저자) Odd Stalebrink, Pierre Donatella •(토론자) Mike Blake, Tobias Polzer •(제목) Differential Reporting - Financial Report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Public Sector Entities: Status Quo Analysis, Research Approach and Preliminary Findings •(저자) Berit Adam, Jens Heiling •(토론자) Bernhard Schatz, Carolyn Cordery

1) 국제비교정부회계연구회(Comparative International Government Accounting Research: CIGAR)는 1987년 James Chan(일리노이주립대학), Rowan Jones(버밍엄대학), Klaus Luder(독일행정과학수피아어대학)가 정부 회계의 국제적인 비교 연구와 논의를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한 학술 네트워크로 콘퍼런스나 워크숍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음(<https://www.cigar-network.net/>)

다음은 발표된 논문 초안의 주제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세션 1〉 공공부문의 재무제표 표시

① Users and commitments to knowledge templates in public sector standard setting : The Case of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 (발표자) Annemarie Conrath-Hargreaves(Monash University)
- (주제) 공공부문 재무제표의 이용자 및 이들의 재무제표 표시 관련 견본지식에 대한 인식적 관여도 분석
- 주요 내용
 - 일반시민과 일반전문가, 직업전문가로 구분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진행
 - 기타포괄손익 표시에 관한 견본지식(IFRS, IPSAS, GFS)과 관련된 이용자 집단의 인식적 관여도 (Epistemic Commitments)의 변화를 2개 가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분석
 - 직업전문가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반면, 일반시민과 일반전문가의 경우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
- (결론) 일반시민과 일반전문가는 기준제정 과정에 중요한 input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input은 이용자로서의 일반시민의 관점과 직업전문가의 인식의 괴리를 줄이는 데 중요함

② Other Comprehensive Income: Can it be introduced in the public sector?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발표자) Laurence Morgana(CNoCP)
 - (주제) IFRS의 기타포괄손익 개념 소개 및 기타포괄손익 관련 연구결과의 분류·정리
 - 주요 내용
 - 기타포괄손익 개념의 공공부문 도입 시 예상되는 한계점* 분석
- * 순자산 개념에 대한 제약, 이익의 의미와 성과 측정에 대한 의문 존재

-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재무제표 비교를 통한 공공부문의 기타포괄손익 표시방법 및 대표 유형 분석
- (결론) 기타포괄손익이 대표 유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기타포괄손익 보고서는 발생주의 예산회계와 발생주의 (결산)회계의 차이에 대해 보고 가능
 - * ① 금융자산과 유형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따른 손익, ② 종업원급여 등에 대한 보험수리적 손익

〈세션 2〉 할인율과 차등보고

③ Public Pension Governance and Opportunistic Accounting Choice
: A Politico-Economic Approach

- (발표자) Odd Stalebrink(Pennsylvania State University-Harrisburg)
- (주제) 공적연금 관리의 제도적 특성과 기회주의적 연금 회계처리 선택(OPAC*)의 관계 분석
 - * Opportunistic Pension Accounting Choices
- 주요 내용
 - 보험수리적 가정의 선택은 연금부채 및 연간 필수 기여금(Annual Required Contributions)의 가치에 영향을 미침
 - 예산계약의 회피, 연금재정 상황을 호도할 목적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의 기회주의적 선택 발생
 - 114개 주정부 운영 연금제도의 실증적 자료 분석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연금관리의 제도적 특성이 OPAC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는 연금관리의 제도적 특성을 OPAC의 유발 요인과 억제 요인으로 분류
- 유발 요인: 미적립제도, 비용분담제도, 정치적으로 설립된 신탁 주체의 감독, 보증을 제공하는 정부의 노조화, 당파적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
- 억제 요인: (외부의 독립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 (결론) 전문직 감사자가 ARC 지급의 부족 또는 정부 재무보고서의 투명성 약화와 같은 OPAC 행위의 역효과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④ Differential Reporting - Financial Report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Public Sector Entities: Status Quo Analysis, Research Approach and Preliminary Findings

- (발표자) Berit Adam(Berlin School of Economics and Law: CIGAR)
- (주제) 차등보고 회계기준 체계 마련을 위한 현행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회계기준 분석
- 주요 내용
 - 전체 IPSAS 기준서 적용에 대한 중소 공공부문실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차등보고 체계 마련 필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등보고 관련 현행 정책 또는 회계기준 체계 검토
 - 공공부문: IPSASB, Eurostat의 차등보고 관련 현행 정책추진 현황
 - 민간부문: IFRS for SMEs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향후 전망(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선별 기준 및 경감사항의 유형 등)
 - OECD 회원국 중심 16개국의 차등보고 현황 조사를 통해 중소 공공부문실체의 선별기준 및 경감사항의 핵심 요소 분석
 - 선별기준: Eurostat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별기준 분석
 - 경감사항: 중소 공공부문실체에 적용되는 차등보고 사항의 유형
- (결론) 2020년 9월에 발표될 최종논문에 포함될 예정임

4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IPSASB는 2020년 2월 21일에 수익(Revenue)과 이전비용(Transfer Expenses)에 관한 3종의 공개초안(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ED 72, '이전비용')²⁾을 발표하고, 공개초안의 의견요청사항(Specific Matters for Comment)에 대한 의견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psasb.org/news-events/2020-04/ipsasb-extends-comment-period-exposure-drafts-addressing-revenue-transfer-expenses>

ED 70과 ED 71, ED 72는 IPSASB가 지난 2015년부터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수익 프로젝트와 비교환비용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IPSASB는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 개념을 중심으로 수익 및 비교환비용의 독립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수익거래 기준서의 체계를 재편하고, 비교환비용의 회계처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고자 노력해 왔다.

〈ED 70, ED 71, ED 72의 적용효과〉

프로젝트	현행 IPSAS	공개초안	비고
수익	IPSAS 9,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	IFRS 15 기반
	IPSAS 11, '건설계약'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IPSAS 23 업데이트
비교환비용	N/A	ED 72, '이전비용'	신설

먼저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은 민간부문의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바탕으로 개발된 기준서(안)이다. ED 70은 수익의 인식 및 측정 원칙으로서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Public Sector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IPSASB는 계약, 고객, 수행의무 등 IFRS 15의 주요 용어들을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

2) Exposure Draft 70,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
 Exposure Draft 71, '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s'
 Exposure Draft 72, 'Transfer Expenses'

였다. 또한, 법령 등에 따라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부문 특유의 거래에 적용할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은 주로 현행의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ED 70을 적용하지 않는 수익거래, 즉 수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수익거래에 적용된다. ED 71은 그러한 수익거래의 경우 수취한 자원에 대해 현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현재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와 측정방법을 달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D 71은 여기에 더하여 현행 IPSAS 23에서 명확히 다루지 않았던 자본이전(capital transfer), 수증용역(service in-kind), 예산배정(budget appropriation) 거래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한다.

ED 72, '이전비용'은 보조비와 같은 이전비용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이전비용은 공공부문실체가 재화나 용역 등을 직접적인 대가 없이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세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전비용의 인식 원칙은 이전비용이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이전수령자(transfer recipient)에게 수행의무를 부담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른 이전비용 중 이전수령자에게 수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5단계로 구성된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을 적용하여 인식하며, 그 외의 것은 자원의 유출 시점과 현재의무의 발생 시점 중 이른 시기에 인식한다. 구속력 있는 약정에 의하지 않은 이전비용은 자원의 유출 시점에 인식한다.

다음 표는 IPSASB에서 제공한 ED 70과 ED 71, ED 72의 'At a Glance' 자료를 바탕으로 각 공개초안의 적용 대상 거래와 그 수익 및 비용의 인식시기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 / 거래유형	수익					이전비용			이외의 비용
	구속력 있는 약정 ○		구속력 있는 약정 ×		구속력 있는 약정 ○		구속력 있는 약정 ×		
	수행의무 ○	수행의무 × 현재의무 ○	현재의무 ×	조세 이외	조세	수행의무 ○		수행의무 ×	
적용 대상 기준서	ED 70	ED 71			ED 72			다른 IPSAS	
수익/비용 인식시기	수행의무 ¹⁾ 이행 시 (PSPOA)	현재의무 ²⁾ 이행 시	자원 유입 시	과세사건 발생 시	수행의무 ³⁾ 이행 시 (PSPOA)	자원 유출과 현재의무 ⁴⁾ 발생 중 이른 시기	자원 유출 시	-	
(유형①) A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함	✓							✓	
(유형②) A가 제3자를 위해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함	✓				✓				
(유형③) A가 B의 특정 활동 수행 또는 적격지출 발생을 위한 자원을 B에게 이전함		✓				✓			
(유형④) A가 B에게 특정 조건 없이 자원을 이전함			✓				✓		
(유형⑤) A가 B에게 조세를 납부함				✓				✓	

- 주: 1)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라 자원수령자(resource recipient)가 부담하는 수행의무
 2)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라 자원수령자(resource recipient)가 부담하는 현재의무
 3)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라 자원수령자(resource recipient)에게 부여하는 수행의무
 4) 이전제공자(transfer provider)에게 자원을 제공해야 할 현재의무가 있을 경우

IPSASB는 ED 70과 ED 71, ED 72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당초 올해 9월 15일까지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의견 제출기한을 올해 11월 1일까지 연장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각 공개초안의 주요 의견요청사항(Specific Matters for Comment)에 대해 국가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의견서를 작성하여 IPSASB에 제출할 예정이다.

5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11월 개최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020년 11월 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공적연금 회계 및 국가별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적연금은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미래 재정건전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관련 회계정보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센터는 OECD 국가별 사례조사를 토대로 회계처리가 상이한 프랑스, 스위스, 일본을 대상으로 위탁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연구를 담당한 Fabienne Colignon(프랑스 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 Andreas Bergmann(스위스 취리히 응용과학대학), Ryota Kaneko(일본 고쿠가쿠인 대학)를 포함하여 국내·외 회계 전문가가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제1회를 맞이하는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성과확산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공공부문화계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실질적 활용과 제도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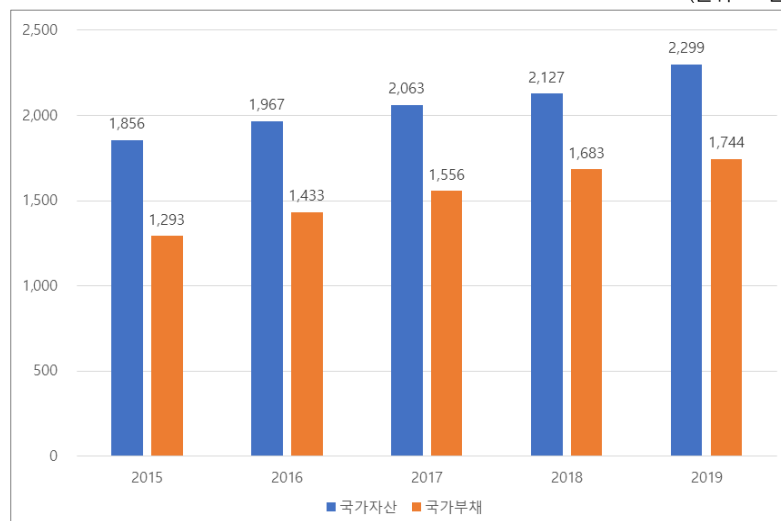
1 2019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수정 반영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같은 달 10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감사원은 결산검사 수행결과를 5월 20일에 기획재정부로 송부하였다.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국가자산은 0.3조원 감소, 국가부채는 0.1조원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299.4조원, 부채는 1,743.7조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55.7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기금 여유자금 증가 등으로 자산이 전년 대비 172.8조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와 기타 발생주의 부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60.3조원 증가하였다.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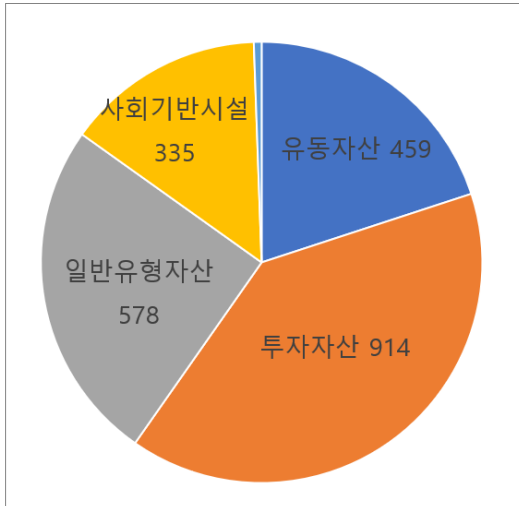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5~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15~2019 각 연도

〈국가자산의 구성〉

(단위: 조원)



〈국가부채의 구성〉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9

2019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299.4조원으로 전년 대비 172.8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 57.7조원, 투자자산 86.1조원, 일반유형자산 20.0조원, 사회기반시설 5.4조원, 무형자산 0.1조원, 기타비유동자산 3.5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39.7%와 25.1%, 그다음으로 유동자산이 20.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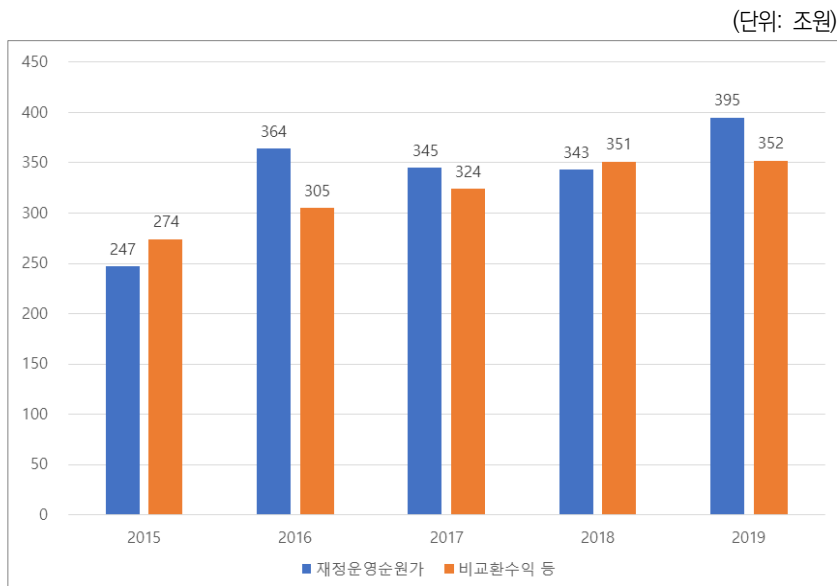
2019년 말 현재 자산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270.9조원, 현금및현금성자산 31.0조원, 단기금융상품 63.0조원 등 총 458.9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630.7조원, 장기대여금 152.6조원 등 총 914.0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355.2조원, 건물 68.3조원 등 총 577.6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192.7조원, 철도 42.3조원 등 총 334.9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1.4조원 등 총 1.5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미수채권 5.9조원 등 총 12.5조원이다.

2019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1,743.7조원으로 전년 대비 60.3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차입부채 41.9조원, 유동부채 14.2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7.4%, 장기차입부채는 31.4%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72.6조원, 유동성장기 차입부채 59.8조원 등 총 153.5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532.7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0.9조원 등 총 546.9조원이다. 장기총당부채 1,000.3조원은 연금총당부채 944.2조원, 퇴직수당총당부채 48.4조원, 기타 7.7조원(보증총당부채 4.5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 유동부채 43.0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0.2조원, 장기미지급금 12.8조원이다.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394.7조원이며, 비교환수익 등 351.7조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43.0조원이다. 이는 재정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였음을 나타낸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51.4조원 증가하였고, 비교환수익 등은 0.6조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7.8조원에서 43.0조원으로 전년 대비 50.8조원 증가하였다.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출처: 기획재정부, 「2015~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15~2019 각 연도

이번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 2020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7~10월)

「2020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7월 1일 부산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2차에 걸쳐 전국 8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 세종, 원주)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특히, 2018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의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등의 과목을 통해 회계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법 등의 과목을 통해 회계 담당 공무원이 회계 관련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재무결산 담당자가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결산업무 진행 순서대로 세부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교육 커리큘럼〉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가 회계 이론	1일차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5.0	1. 회계원리의 이해 2. 재무제표의 이해 3.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이해 4. 회계 순환과정의 이해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2.0	1. 국가 재정운용체계 2. 국가회계의 의의와 구분 3. 국가회계법령의 개요 4. 국가회계기준의 체계와 주요 내용 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6.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기본사례
	2일차	국가재무정보 기초사례 연습	0.5	1. 국가재무정보 이해를 위한 기초사례 2. 사례를 기초로 한 국가의 예산, 추경, 재정, 프로그램, 회계와의 관계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가 회계 이론	2일차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세출거래의 복식부기 변환 2. 발생원인에 따른 세입세출거래의 3가지 유형 3. 세입세출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4. 수익·원가·자산·부채와 국가회계의 특성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산조정: 발생주의 재무정보로의 전환 2. 자산·부채평가 3. 기간손익 조정 4. 비현금거래와 원가의 재분류
		종합사례 연습	2.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사례의 기본 가정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현금흐름과 회계기록 3. 현금주의에 따른 복식부기 기록방식 및 회계처리 4. (현금주의) 수정전 시산표와 재무제표 5. 발생주의 항목의 이해 및 회계처리 6. (발생주의) 수정후 시산표와 재무제표
국가 회계 실무	1일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	5.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형별 dBrain 업무 처리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지출 관련 유의사항(1,2,4,5~8,10차 교육) - 국유재산, 물품 관련 유의사항(3,9차 교육)
		재무제표를 통해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이유 2. 재정운영표 살펴보기 3. 재정상태표 살펴보기 4. 주식 등 기타 정보 살펴보기
재무 결산 실무	1일차	재무결산의 이해	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회계의 의의와 도입과정 2. 국가회계 관련 법령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4.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 국가회계편람 수정사항 3. 재무정보 조회 및 점검 방법 4. 수정전 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및 마감
		감사원 지적사례	2.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원 지적사례
	2일차	내부거래실무	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결산조정분개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 오류사례
		결산보고서 작성	2.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 3. 결산보고서 발행

〈교육 개요〉

교육 기간	2020년 7~10월(총 12회)
교육 지역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제주·세종·원주
대 상 자	국가회계 관련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인원	각 회차당 48~70명(교육장 내 거리두기 실시로 교육인원 축소)
교육 과정	국가회계이론 과정(2일간, 10회) 국가회계실무 과정(1일간, 10회) 재무결산실무 과정(2일간, 2회)
수강 신청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s://www.kipf.re.kr/edu/)에서 신청

03

재정통계 동향

1 2019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1년 재정통계 개편 이후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GFS)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매년 작성해오고 있다.

(1) 포괄범위 지정

매년 신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성 테스트(원가보상률 및 정부판매 비율)를 수행하여 비영리 공공기관과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한다. 2020년 신규 지정된 4개 공공기관의 경우 모두 일반정부로 분류되었다.

(2) 설명회 개최 및 재정통계 검토

매년 재정통계 작성 대상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통계 템플릿 작성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설명회를 취소하고 유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재정통계 템플릿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관별로 제출받은 비영리공공기관 및 비금융 공기업 재정통계 검토를 수행한 후, 기관별 재정통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3) 재정통계 통합 및 결과 송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등의 재정통계가 확정되면, 각 부문별로 재정통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고려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GFS)와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산출하고 연말에 관련 재정통계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1 포괄범위 지정

- (대상) 매년 1월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신규 공공기관
- (검토) 원가보상률, 정부판매 비율 등을 검토해서 기관 분류

2 공공기관 설명회 개최

- GFS 및 PSDS 작성지침과 템플릿 마련 및 배포
- 공공기관 설명회 개최

3 재정통계 작성 및 검토

- (중앙정부) 회계기금재정통계작성및공공기관작성내역검토
- (지방정부) 지자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재정통계 검토

4 재정통계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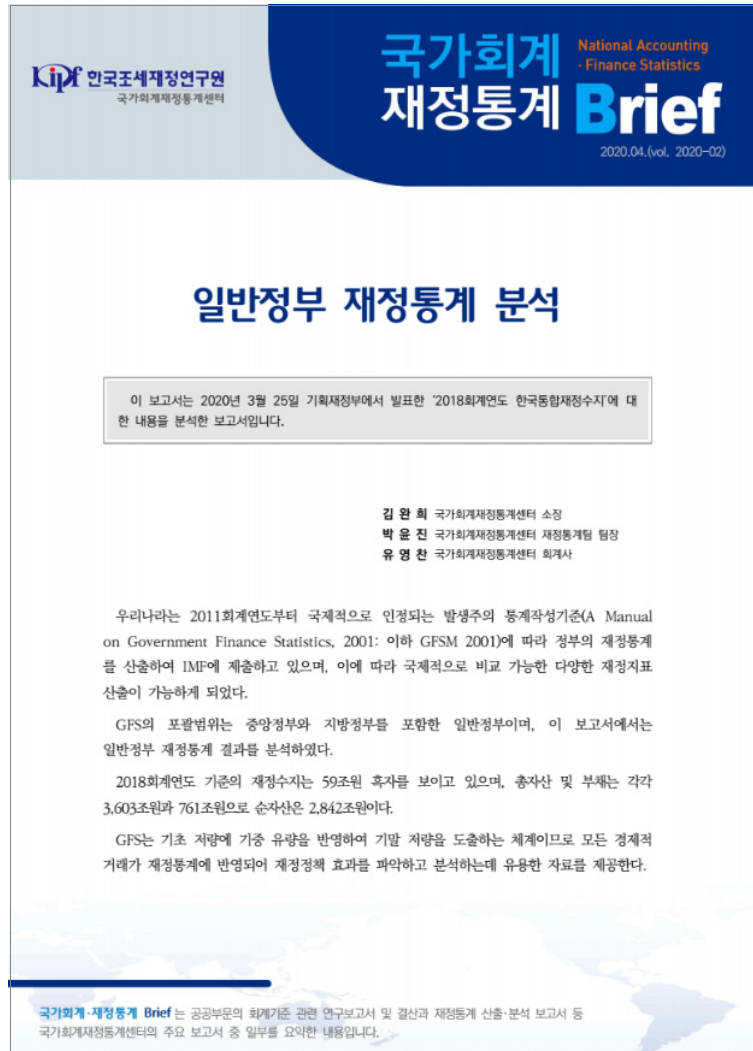
- (내부거래 취합) 부문별로 내부에서 발생한 거래를 취합
- (부문별 통합)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정부, 공공부문

5 결과 송부

- (PSDS) D1(국가채무), D2(일반정부), D3(공공부문) 발표 및 OECD 제출
- ('01GFS) 일반정부 재정통계 IMF 제출

4

2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GFS) 분석에 대한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를 발간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보고서 및 보도자료는 내용이 많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Brief에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기존 내용에 추가 분석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가. GFS 재정지표

GFSM에 따라 산출되는 통계 보고서의 재정정보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재정지표들을 도출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재정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유형	2018년 규모 (GDP 대비)	산출식	의미	비고
순운영수지	96조 (5.1%)	총수익-총비용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정부운영표
재정수지 ¹⁾	59조 (3.1%)	총수익-총지출	금융자원의 제공 여부	정부운영표
순자산	2,842조 (150.1%)	자산-부채	재정활동의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순금융자산	693조 (36.6%)	총금융자산-부채	유동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확정부채	760조 (40.1%)	총부채-주식및기타지분과 파생상품부채	부채의 건전성 (PSDS 기준)	재정상태표

주: 1) GFSM 2001에서는 순융자(Net lending)·순차입(Net borrowing)의 용어를 사용함

출처: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

정부운영표상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의 금액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익(A)	505	4.2	535	5.9	568	6.3	610	7.4	634	3.9
총지출(B=C+D)	484	4.5	515	6.4	525	2.0	563	7.2	575	2.2
총비용(C)	443	5.2	470	6.2	483	2.7	517	7.0	538	4.0
비금융자산의 순취득(D)	41	△2.1	45	8.7	42	△5.8	46	8.5	37	△19.0
순운영수지(A-C)	62	△2.0	64	3.7	85	32.2	93	9.6	96	2.8
재정수지(A-B)	21	△1.7	20	△6.2	43	119.8	47	10.8	59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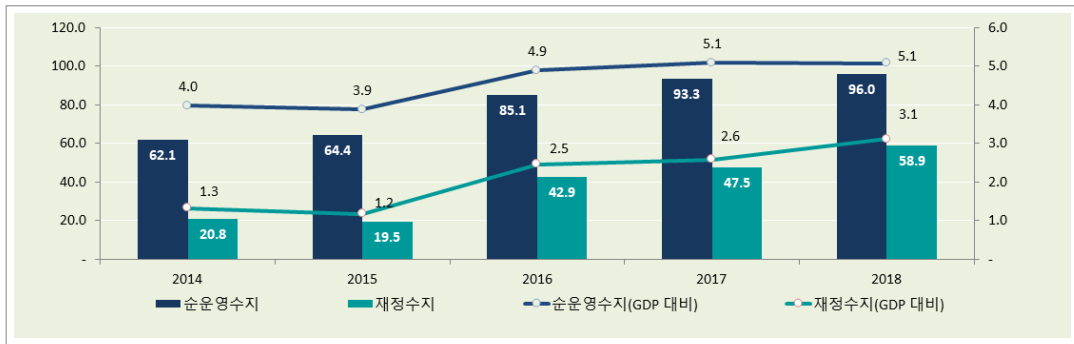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GFSM에 따라 산출되는 주요 재정수지 관련 지표의 추세를 살펴보면, 재정수지는 2014회계연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회계연도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에도 2017회계연도에 이어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규모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중앙정부의 법인세 12.9조원과 소득세 10.1조원 증가 및 지방정부의 지방소득세가 2.1조원 증가하는 등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됨에 따른 것이다.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재정수지 5개년 추세〉

(단위: 조원, GDP 대비 %)



출처: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자산과 부채의 추세

재정상태표상의 자산·부채의 금액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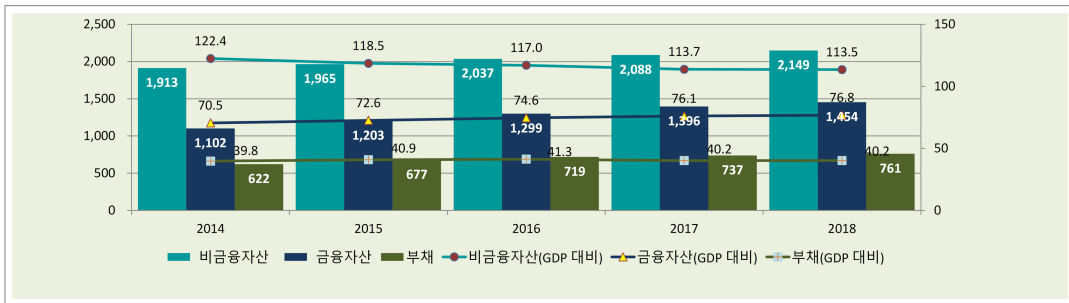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순자산	2,393	3.6	2,491	4.1	2,617	5.0	2,747	5.0	2,842	3.5
자산	3,015	4.8	3,169	5.1	3,336	5.3	3,484	4.4	3,603	3.4
비금융자산	1,913	2.3	1,965	2.7	2,037	3.6	2,088	2.5	2,149	2.9
금융자산	1,102	9.5	1,203	9.2	1,299	8.0	1,396	7.5	1,454	4.2
부채	622	9.6	677	8.9	719	6.1	737	2.6	761	3.2

출처: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재정상태표상 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2013회계연도부터 감소로 전환되었고 부채의 GDP 대비 규모 또한 2017회계연도에 감소로 전환되어 2018회계연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5개년 추세〉

(단위: 조원,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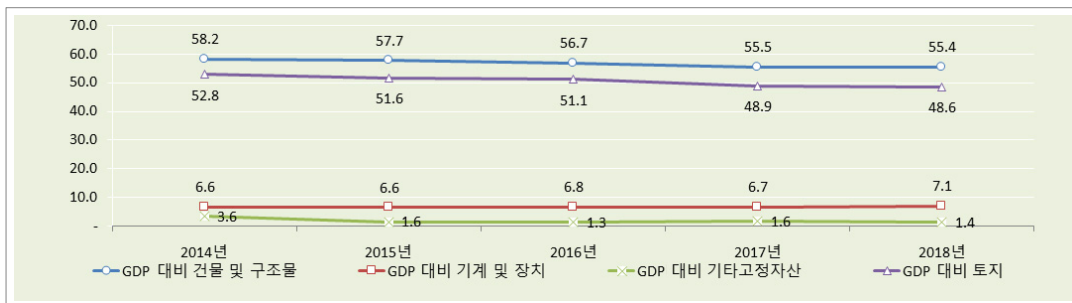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비금융자산의 세부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건물 및 구조물과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GDP 대비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 축소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비금융자산의 5개년 추세〉

(단위: GDP 대비 %)



출처: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자산과 부채의 변동원인

2018회계연도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산 중 비금융자산은 거래(취득-처분-고정자산소비)로 37조원이 증가하였으며,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 2조원, 누락자산 등재 등 기타내용변화로 22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61조원 증가하였다.

금융자산은 주로 부채 조달 및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에 따른 거래로 75조원,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 $\Delta 9$ 조원, 기타내용변화 $\Delta 9$ 조원이 각각 변동되어 총 58조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거래(차입 및 상환 등)로 17조원,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 6조원, 기타내용변화 1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24조원 증가하였다.

즉 GFS 체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 보고서에 집계되므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 명세〉

(단위: 조원)

구분	2018 기초	변동내역(flow)			2018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3,484	113	$\Delta 7$	13	3,603
비금융자산	2,088	37	2	22	2,149
금융자산	1,396	75	$\Delta 9$	$\Delta 9$	1,454
부채	737	17	6	1	761

출처: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단위: 조원)

구분	2017 기초	변동내역(flow)			2017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3,336	118	30	0	3,484
비금융자산	2,037	46	2	3	2,088
금융자산	1,299	72	28	$\Delta 3$	1,396
부채	719	25	$\Delta 2$	$\Delta 4$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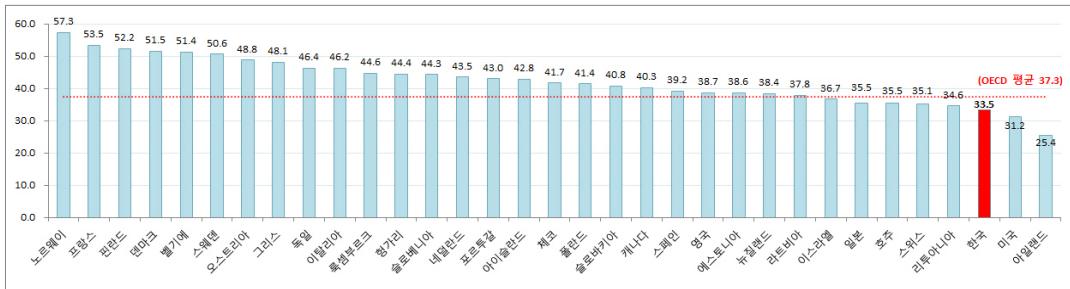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마. 국제 비교

일반정부의 총수입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18년 우리나라 총수입은 GDP 대비 33.5%로 OECD 평균인 37.3%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8년 일반정부 총수입의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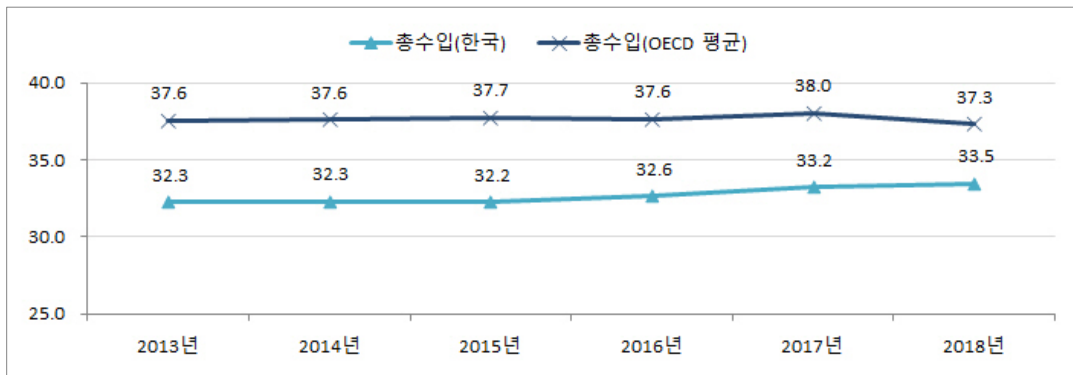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6 (2019.11),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입

우리나라 GDP 대비 총수입은 2013년 32.3%에서 2018년 33.5%로 1.2%p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2013년 37.6%에서 2018년 37.3%로 0.3%p 감소하였다.

〈2018년 일반정부 GDP 대비 총수입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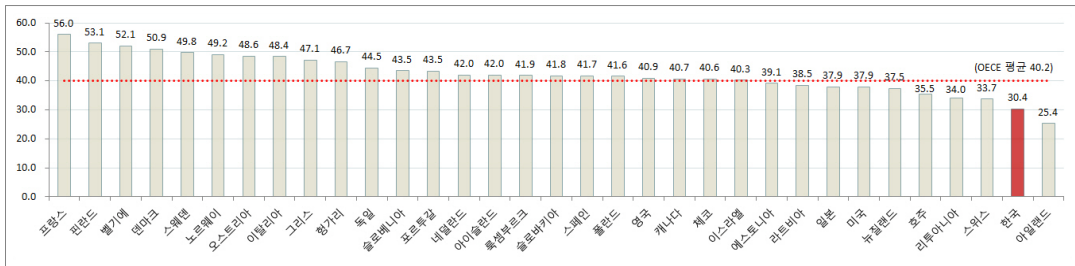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6 (2019.11),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입

일반정부의 총지출의 경우 2018년 우리나라 총지출은 GDP 대비 30.4%로 OECD 평균인 40.2%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8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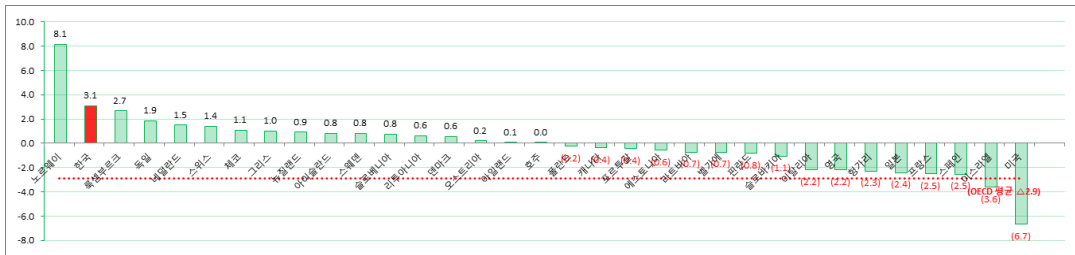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6 (2019.11),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지출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3.1% 흑자로 OECD 평균인 △2.9% 적자 대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재정수지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6 (2019.11),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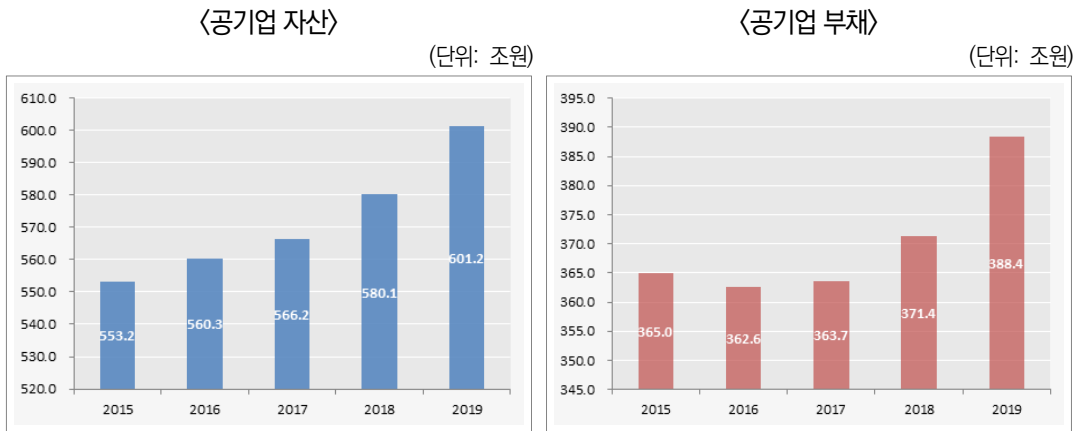
3 2019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분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고 공기업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2019회계연도 결산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등 36개 기관¹⁾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해당 공기업에 대한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결산결과를 분석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기업의 자산은 601.2조원, 부채는 388.4조원이고, 매출액은 145.2조원, 영업이익은 7.2조원, 당기순이익은 1.5조원이다.

가. 공기업 자산과 부채

공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공기업의 자산은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 자산손상차손 인식,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판매 저조로 인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감소,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자산 손상차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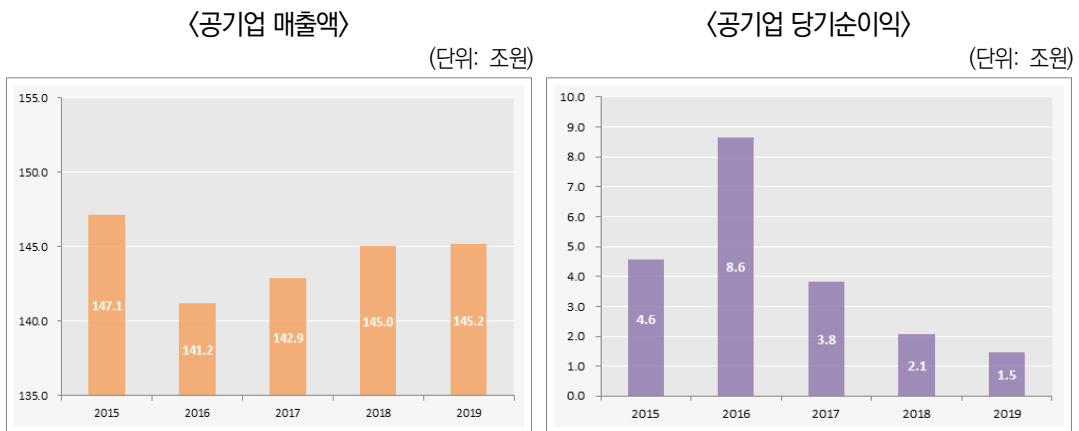
1)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9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국 가스공사의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주식회사 에스알)는 각각 모회사가 연결하여 재무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11개 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보고는 생략함

등으로 5개년 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2015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설비투자 등으로 공기업의 자산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년 신(新)리스기준서 적용으로 사용권자산 인식 및 임대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1.1조원 증가하였다.

공기업의 부채는 2019년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 및 사채 발행과 신(新)리스기준서 적용에 따른 리스부채 인식 등으로 전년 대비 17.5조원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나. 공기업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공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공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LNG 단가 하락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도 공기업 매출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판매수익이 감소하고 한국가스공사의 가스판매물량이 감소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분양매출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62억원 증가하였다.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자산손상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이익 감소 등으로 감소 추세이다. 2019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판매량 감소에 따른 전기판매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250억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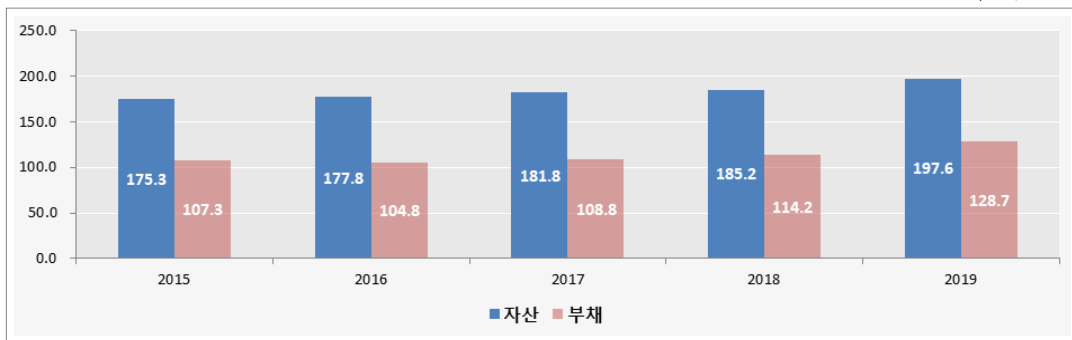
다. 주요 공기업 증감 분석

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2019회계연도 공기업 총자산 중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 중 33.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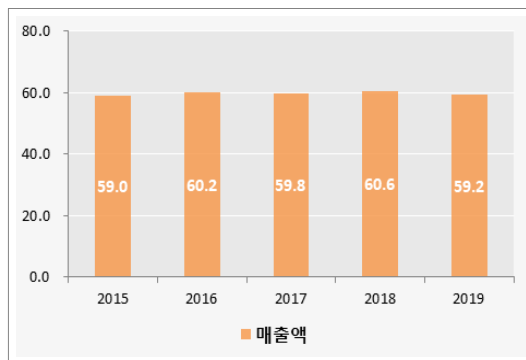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전력공사는 지속적인 전력설비 투자로 유형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부족자금 조달로 인한 차입금 및 사채의 발행 증가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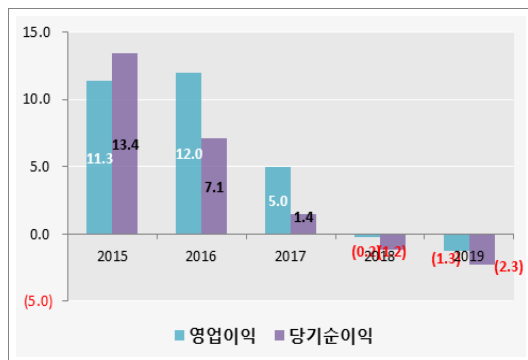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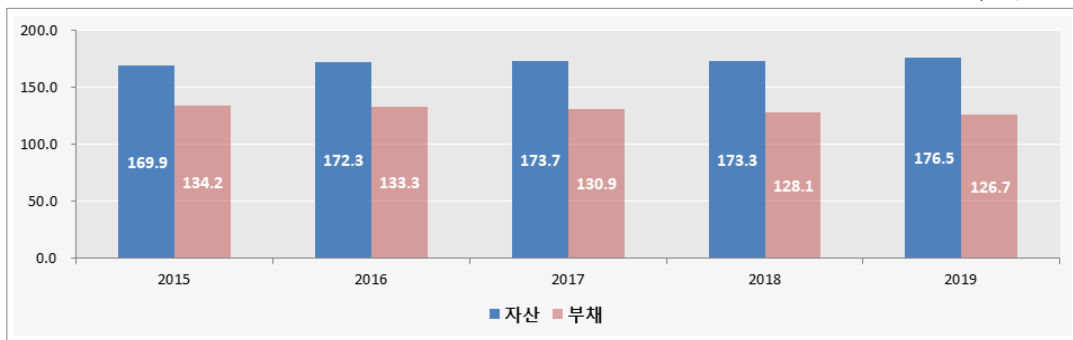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5개년 동안 60조 내외의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9년에는 전력판매량 감소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2016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 추세이며, 2019년에는 전기판매수의 감소, 온실가스 배출비용 증가,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회계연도 공기업 총자산 중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 중 32.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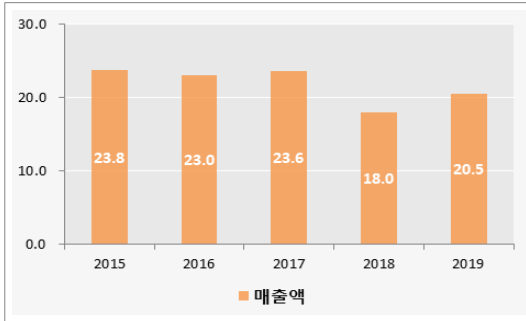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및 토지 분양, 임대주택 등에 따라 자산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전세임대대여금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차입금 감소로 부채가 줄어들었고,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부채 상환으로 부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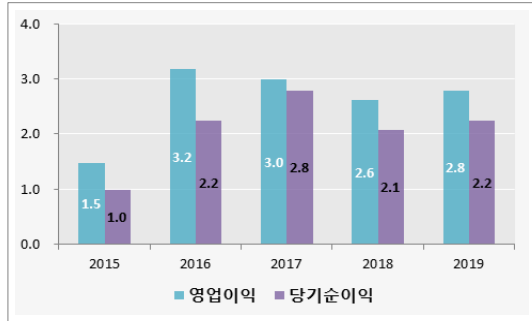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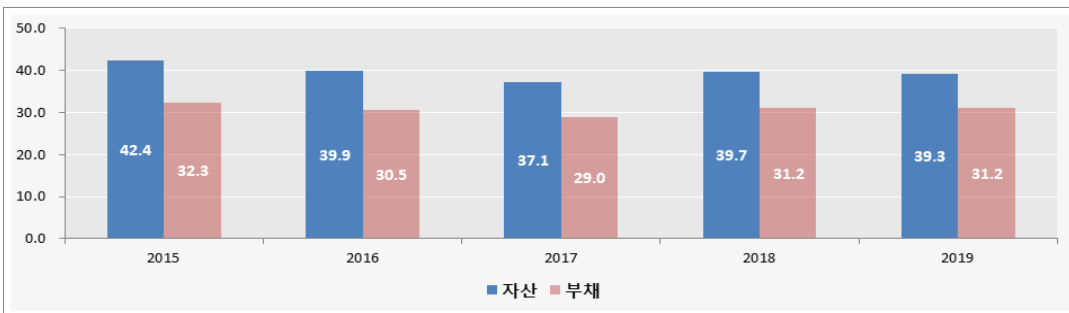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까지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 토지매출의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매출 증가와 더불어 분사 이전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을 받음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분양토지매출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2.5조원, 영업이익은 1,691억원, 당기순이익은 1,680억원 증가하였다.

3)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공기업 총자산 중 6.5%, 총부채 중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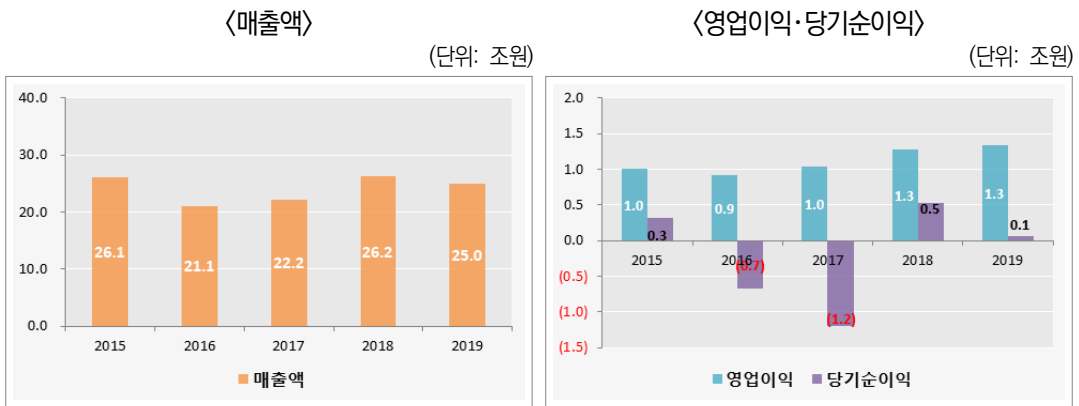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까지 가스판매량 및 판매단가 하락으로 매출채권 감소, LNG 단가 하락으로 인한 재고자산 감소,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등으로 자산이 감소하였고, 운영자금 규모 축소로 차입금이 감소하여 부채가 줄어들었다.

2018년에는 재고물량 및 구매단가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였고, 운전자본 증가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한 차입금 감소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2019년의 경우 손상차손 발생에 따른 유·무형자산 감소 등으로 자산이 감소하였다.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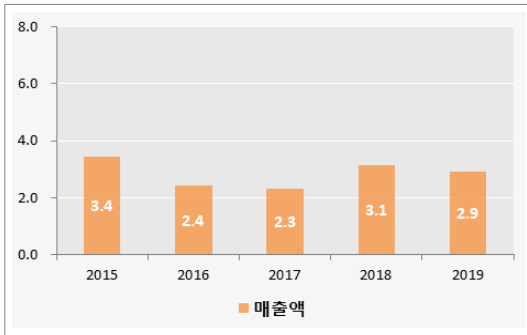
한국가스공사는 2015년 이후 판매물량 감소 및 천연가스 판매단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2018년의 경우 천연가스 판매량 증가 및 판매단가 상승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가스판매물량 감소로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해외자원개발자산 등의 손상차손 발생(2016년: 1조 49억원, 2017년: 1조 7,30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손상차손(2018년: 1,032억원) 감소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에는 해외사업 손상차손(2019년: 4,305억원) 증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다.

4)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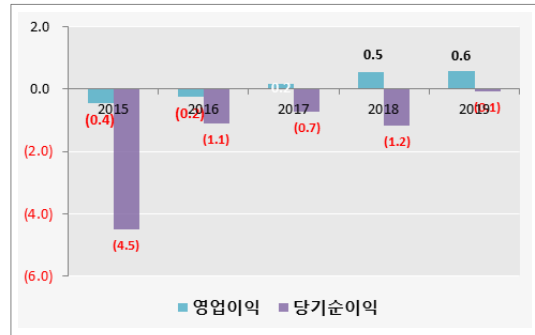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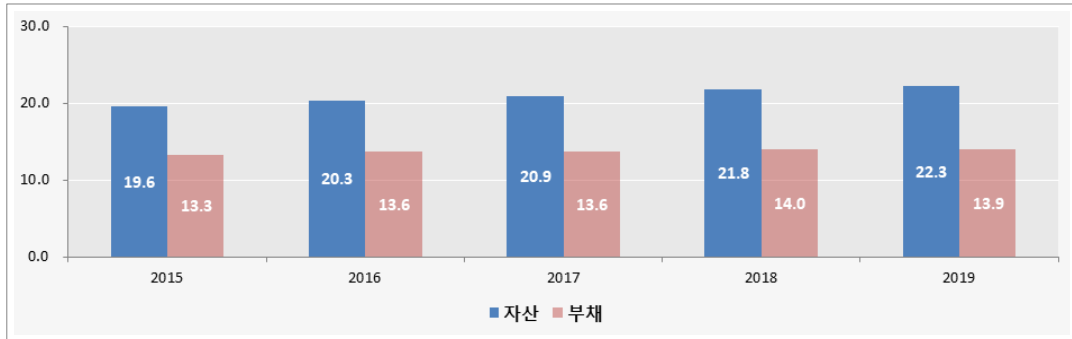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 정제사업 부문의 종속기업을 매각하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유가 하락 등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에는 원유와 가스 판매단가 상승 및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원유와 가스의 판매단가 상승 및 판매량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발생(3조 1,920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8년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 손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2019년의 경우 해외사업 손상차손 및 투자기업 지분법 손실이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1조 746억원 축소되었다.

5) 한국수자원공사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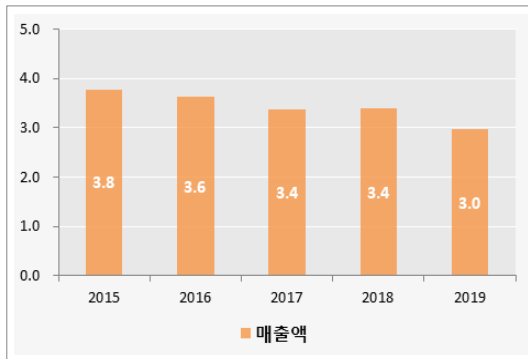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년 4대강 투자금 회수방안 확정으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금액의 차이를 무형자산손상(6.3조원)으로 인식하여 자산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자산·부채는 증가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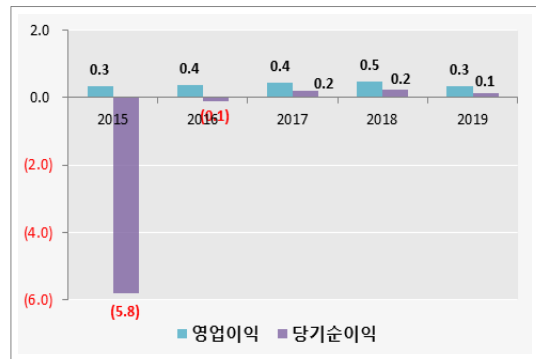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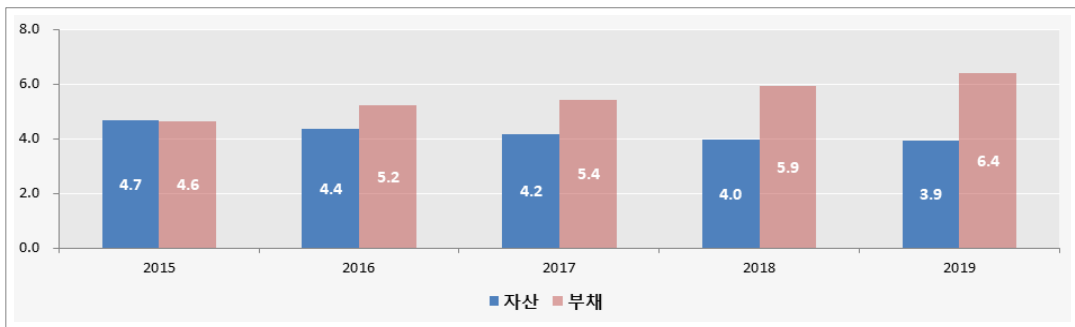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는 분양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2015년 이후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4대강 무형자산손상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을 크게 기록하였다.

6)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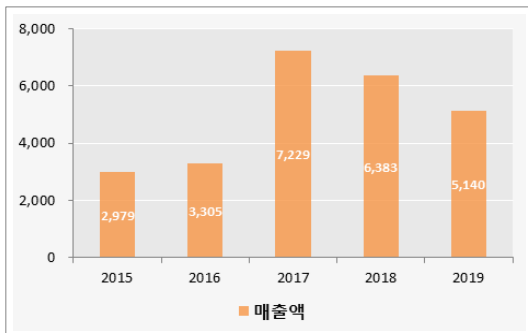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4년까지 볼레오 광산 투자로 인해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2014년 이후 볼레오 광산 손상 및 해외투자주식 손실로 자산이 감소하였고,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한 사채 및 글로벌본드 발행으로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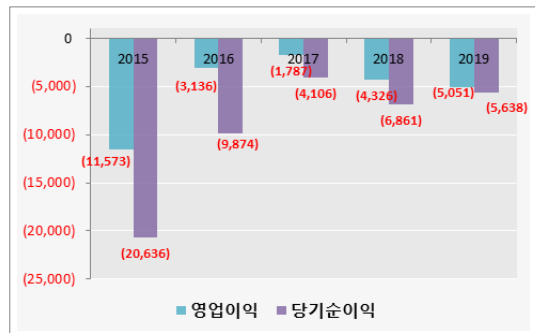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억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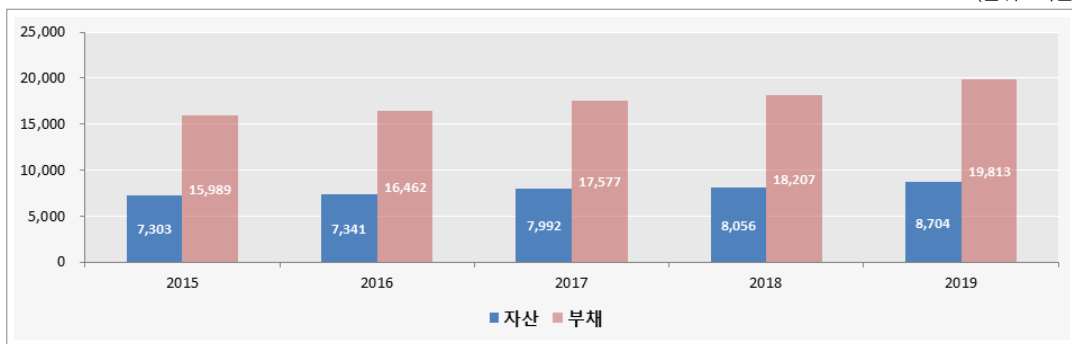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매출액은 광산물판매, 지분투자회사의 지분법이익, 대부투자 이자수익 및 외환 거래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에는 장기 광물가격 전망치 하락에 따른 투자주식 평가손실 및 유·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2019년에는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투자지분 처분손실 등 영업손실은 확대되었으나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 자산 손상차손이 폭이 크게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1,223억원 축소되었다.

7) 대한석탄공사

〈자산·부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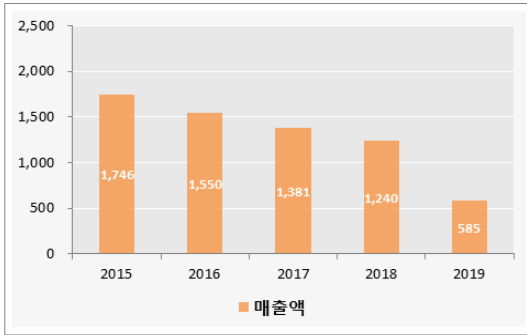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대한석탄공사는 시설투자로 인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증가로 자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운영자금 부족 및 지속적인 적자로 차입금을 늘리면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완전자본잠식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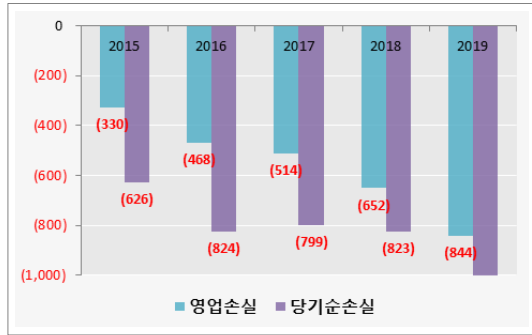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억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대한석탄공사는 석탄소비 감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생산 감축으로 경제적 생산 기반(규모의 경제)이 미달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4 『2020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0 알기 쉬운 재정통계』를 발간하였다.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개념 및 우리나라 재정통계 개편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GFSM 2014 도입이 미칠 주요 변화와 2018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수록하여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2020 알기 쉬운 재정통계』는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통계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쉽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1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발간

정부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서류 공시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2017년 제정하여 2018년부터 적용하였다.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자산가액 20억 이하의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회계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었다.

2020년부터는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소규모 공익법인 등의 회계교육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발간하였다.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이해,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특수한 회계처리 등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특히 4장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에서 소규모 공익법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계정과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현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7월 1일(수)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본고는 토론회에서 센터가 발표한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 및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개요

1. 주제: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일시: 2020.7.1.(수) 15:00 ~ 17:20
3. 장소: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4. 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주제발표 요약

1)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배경 및 효과

□ 도입배경 및 제정과정

- 공익법인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및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관련 회계기준이 부재하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 2017년 12월 7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최종 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였다.

□ 도입효과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존 현금주의에서 제시하지 못한 공익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동일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증대하였다.

- 재무제표 구분회계 적용을 세법상 구분기준이 아닌 공익법인의 실질적 운영 현황에 맞게 처리하도록 변경하였다.

2) 공익법인 재무 현황 분석

□ 재무 현황 개요

- 전체 공익법인(2018년 기준 34,843개*) 중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 2019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8년 기준 공익법인 수

** 2018년 기준 의무공시 대상: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

- 의무공시법인은 총 9,512개 기관이며, 학술장학 2,453개(25.8%)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2,354개(24.7%), 교육 1,621개(17%) 등의 순서이다.
- 공익법인의 총자산은 192조원, 총부채는 47조원 규모이며, 총수익과 총비용은 각각 94조원, 93조원으로 거의 유사하다.

□ 주요 계정별 분석

- (자산)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교육, 의료 분야 공익법인은 유형자산(토지, 건물) 비중이 높고,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술·장학 분야 공익법인은 주식 및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 (사업수익) 공익법인의 사업수익은 기부금수익 7%, 보조금수익은 18%에 그친 반면, 공익목적사업 기타수익 38%, 기타사업수익 35% 등 공익법인의 자체 수익은 비중이 높은 편이다.
- (사업비용) 사업비용 중 공익목적사업비용(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은 66.9%이며, 기타사업비용은 33.1% 수준이다.

□ 구분회계 재무정보

- 구분회계기준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기타(수익)사업에서 공익목적(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 변경되어 공익목적사업 부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사업, 박물관, 연주회·전시회 등 운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 등의 사업구분이 변경되었다.

3) 공익법인 재무정보 활용사례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분석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총 65개*로 전체 공익법인(9,512개)의 0.7%이다.
*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중 비영리법인 출자내역 참고
- (자산)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고 주식 비중(42.4%)이 높은 특징이 있다.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자산 규모 대비 공익사업 등에 지출되는 비용 수준(32.0%)이 일반 공익법인(44.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창출되는 배당수익이 적어 공익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주식의 활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 해외 비영리법인 평가기준의 공익법인 적용

- 채리티 내비게이터(charity navigator)는 비영리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7가지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 중 국내 공익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 평가기준 최저점에 해당하는 지표를 보이는 공익법인은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4)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한계점 및 개선방안

- 기타수익 비중 과다 → 사업수익(매출액, 기타수익) 세분화를 통한 수익 재원 명확화
- 성격별 구분의 제한적 정보 → 사업비용 세분화로 풍부한 정보 제공
- 재무정보 정합성 오류 →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뢰성 강화

다. 토론 요약

(1) 구재이(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외부감사와 결산공시 의무이행 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장부 기장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회계처리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교화하고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한다.
-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게 되면, 과세소득 산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지침이 필요하다.

(2) 박성환(한밭대학교 교수)

- 외부감사 여부에 따른 재무공시 품질의 차이, 수정 공시한 공익법인에 대한 추가 분석, 자발적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분석 등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 공시품질 개선을 위해 모범공시사례집 전파, 공익법인 회계투명 대상 제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재무제표 이외에 공익목적사업 활동별 자원 투입 및 효과 정보, 고유목적사업금 사용계획, 채리티 내비게이터 평가지표 체크리스트 등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 할 정보가 주식 등의 방식으로 제공 될 필요가 있다.
- 외부감사는 재무제표에 한정된 회계감사이지만, 공익법인은 감사위험이 크지 않으므로 내부 통제에 대한 검토의견도 감사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이동식(경북대학교 교수)

- 공익법인뿐 아니라 일반 영리기업도 공익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런 모든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현행 법체계는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경향이 있으며, 통일된 체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공익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4)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 공시자료 중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에서 기타 항목에 대해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담당자 교육, 회계 관리 전담기구 마련, 감사공영제 도입을 통한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준수감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5) 양동구(국세청 법인세과장)

- 공시 서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검증프로그램, 미리 채움 서비스 등을 도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공시 서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산분석을 진행 중이며 주무관청의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통보내용을 종합하여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6) 변광욱(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공익법인의 기부자들에 대한 투명성 담보는 일반기업에 비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영세한 공익 법인도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세제 지원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공익법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7.1),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05 오피니언

1

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공무원연금의 IPSAS 42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 봉 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본 오피니언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해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 42, '사회보장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 김봉환·안중기, 「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공무원연금의 IPSAS 42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9권, 제2호, 2020, pp. 1~21.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767990>

가. 서론

매년 국가결산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약 1,000조원에 이르는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한편은 공무원연금을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해석하고, 다른 한편은 연금충당부채가 재정상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공무원연금제도에 내재하는 거래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공무원연금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교환거래 혹은 비교환거래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연금부채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공무원연금이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라면 교환거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충당부채는 정부의 부채이고 재정건전성 판단에 유용한 정보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이 일종의 사회보장세에 해당한다면 비교환거래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조세 회계처리를 준용하면 되고, 연금충당부채는 불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결국 연금추정지급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현행 연금회계처리방침의 타당성 여부는 공무원연금이 교환거래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공적연금과 관련된 이러한 논란은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지출 중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국제공공부담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2019년 초에 사회보장급여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기준서(IPSAS 42)를 신규로 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IPSAS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를 제·개정할 때 참고 기준으로 이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IPSAS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인 IPSAS 42가 국내 공무원연금 회계처리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 IPSAS 42(사회보장급여) 주요 내용

IPSAS 42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중에서 공적연금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정의를 제시한다. IPSAS 42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완화하고 사회적 요구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이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급여는 첫째,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국방서비스, 가로등 등은 IPSAS 42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위험은 연령, 건강, 빈곤, 고용 상태와 같이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과 관련되며, 그들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지리적 위험은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과 무관하므로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요구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공된다. 퇴직연금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교환거래에 따른 결과이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IPSAS 42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넷째, 현금 이전에 국한된다. 사회보장급여에는 현금 이전만 포함되며, 현금 이외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은 제외된다.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자원의 유출을 일으키는 현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가 질적 특성을 만족하고 측정이 가능할 때 인식한다. 사회보장급여 부채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은 수혜자가 차기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의미한다.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보고실체는 현재의무를 이행할 때 발생할 최선의 원가 추정치로 부채를 측정한다. 차기 이후의 사회보장급여 지급은 현재의무가 없는 미래사건에 해당한다. 차기 이후의 사회보장급여 지급은 현재의무가 없는 미래사건이므로 사회보장급여 부채는 차기 이후의 시점으로 확장될 수 없다(IPSAS 42, AG 17).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단기부채에 해당한다. 즉, 충당부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 IPSAS 42의 국내 적용 가능성

IPSAS 42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우선 공무원연금에 비교환거래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연금 회계처리지침은 공무원연금을 교환거래로 간주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고용주로서 근로자인 공무원에게 후불임금 성격의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무원과 고용주인 정부의 관계는 민간부문에서의 고용관계와 동일하다고 간주하여 공무원연금 회계처리 시 퇴직연금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과 유사한 비교환거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연금체계는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다. 한편,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체계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 혹은 군인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직장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에 대응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일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사회보험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공무원 개인소득만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공무원연금 지급률 1.7% 중에 국민연금 상당 부분인 1.0%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산출할 때 공무원 개인소득과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을 각각 50%씩 반영한다. 다만 나머지 부분인 0.7%는 민간의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소득재분배 기능을 배제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에는 교환거래 성격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비교환거래 성격까지 함께 내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중에서 비교환거래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말해 국민연금에 대응하는 부분은 IPSAS 42의 사회보장급여 정의를 충족한다. 첫째,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연금 지급조건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므로,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한다. 둘째, 퇴직은 연령, 고용 상태와 같이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과 관련되며 그들의 소득을 줄임으로써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해당한다. 셋째, 공무원이 퇴직한 후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급하므로 사회적 요구를 다루기 위한 현금 이전에 속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중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부분은 IPSAS 42에서 제시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IPSAS 42는 공무원연금 관련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IPSAS 42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중 비교환거래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교환거래 부분은 민간의 퇴직연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교환거래에 대응하는 부분은 민간의 퇴직연금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확정급여형이고 실질적으로 부과형으로 운영된다. 부과형은 비교환거래에, 적립형은 교환거래에 더욱 적합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 중 교환거래 부분은 원칙적으로 적립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파산위험이 없으므로 교환거래에 부과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때에는 연금충당부채를 보완하는 추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보전금의 현재가치 정보는 연금충당부채의 한계를 보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라. 결론

IPSAS 42를 국내에 도입한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공무원연금 중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비 혹은 지급률을 초과하는 부분을 교환거래라고 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구분 기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에도 함께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중 국민연금 대응 부분에 IPSAS 42를 적용한다면, 국민연금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현 시점에서 IPSAS 42를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공적연금 회계기준 전반에 대한 재정비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에 도입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06

특집

1 [해외공동 연구] 일본 공적연금 회계제도

아래는 일본 코쿠가쿠인 대학(國學院大學)의 Ryota Kaneko(良太 金子) 교수가 수행한 “Overview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 Japa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 수시과제로 추진한 프랑스와 스위스의 연금제도 심층조사에 이은 추가 조사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일본의 회계기준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한 결과이며, 프랑스 및 스위스의 사례는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 뉴스레터에 각각 소개되었다.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도 전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연금충당부채의 처리 현황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였고, 기획재정부 수시과제를 통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다른 회계처리 방식을 채택하거나, 채택했던 프랑스와 스위스 사례를 심층조사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하였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전문가가 수행한 각 국가의 공적연금 회계제도 연구수행 결과는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 뉴스레터 특집으로 소개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수시과제 보고 과정에서 국가사례 조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회계처리 방식을 채택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주석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심층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과 공무원 이외 민간근로자의 직역연금제도를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모든 연금제도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위탁조사 보고서는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개요 및 회계처리 현황, 그 배경과 근거, 회계보고와 공적연금 관련 부채 계상에 대한 고려 등의 이슈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과 영국, 호주 등 영연방 및 유럽 이외 아시아의 사례를 심층분석함으로써 국가 사례조사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향후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요

1) 개요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본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가입할 의무가 있는 범국민적 연금제도로 기초연금¹⁾과 후생연금 2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현재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가입자 수(2019년 3월 기준) 및 보험료, 급여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일본 연금제도의 개요〉

구분	대상	보험료 납부	연금 급여		피보험자 수
제1호 피보험자 (기초연금)	학생, 자영업자 등	20~60세 (월 16,540엔)	65세~사망 시 (약 65,000엔)	기초연금	1,471만명
제2호 피보험자 (후생연금)	회사원, 공무원	취업~퇴직 (월급의 18.3%) ²⁾	65세~사망 시 (평균 149,000엔)	기초연금 + 후생연금	4,428만명
제3호 피보험자 (기초연금)	전업주부 등	보험료 없음 (제2호 피보험자 부담)	65세~사망 시 (약 65,000엔)	기초연금	847만명

출처: Ryota Kaneko, 「Overview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 Japan」

기초연금의 보험료는 2020년 4월 현재 월 1만 6,540엔이고, 제도 창설 이래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매년 인상되어 왔으며, 2017년 상한에 도달한 이후 그 수준이 고정된 상태이다. 기초연금은 40년 전액 납부 시 65세부터 연 78만 1,700엔이 지급되며, 2017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평균수급액은 월 약 5만 5천엔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국민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불린다.

후생연금은 기초연금에 가산되어 지급되는 연금이다. 기업과 정부에 고용되는 자는 후생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생연금보험료는 매월 급여의 약 18.3%로 이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³⁾ 보험료는 2004년 13.93%에서 2017년까지 매년 인상된 것으로, 이후에는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었다. 2015년 이전까지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별도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였고, 조건

1) 일본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국민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며, 일부 혼용되어 보고서에 언급되고 있음. 본지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기초연금으로 통칭하도록 함
 2) 고용주, 피보험자 절반씩 부담
 3) 보험료 9%를 고용인 4.5%, 피고용인 4.5%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 18%를 국가 9%, 공무원 9%를 부담하는 공무원연금과 보험료율을 제외하고 동일함

등도 상이하였으나 제도적 차이를 후생연금에 맞춰서 해소하는 개정을 통해 이를 일치시켰다.⁴⁾ 후생 연금의 연금급여는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2) 공적연금의 재원과 적립금의 운용

일본의 공적연금은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현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의 수급자에 대한 연금급여로 충당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점점 수입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적연금제도는 일정한 적립금을 보유하여, 이를 운용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수정적립방식이라 칭하기도 한다.

연금급여의 재원은 크게 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 ② 국고부담(기초연금에 대해 1/2 부담, 후생연금은 국고부담 없음), ③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적립금이 서서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의 제도개정은 향후 100년간의 재정균형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적립금의 운용 목표는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률보다 1.7%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책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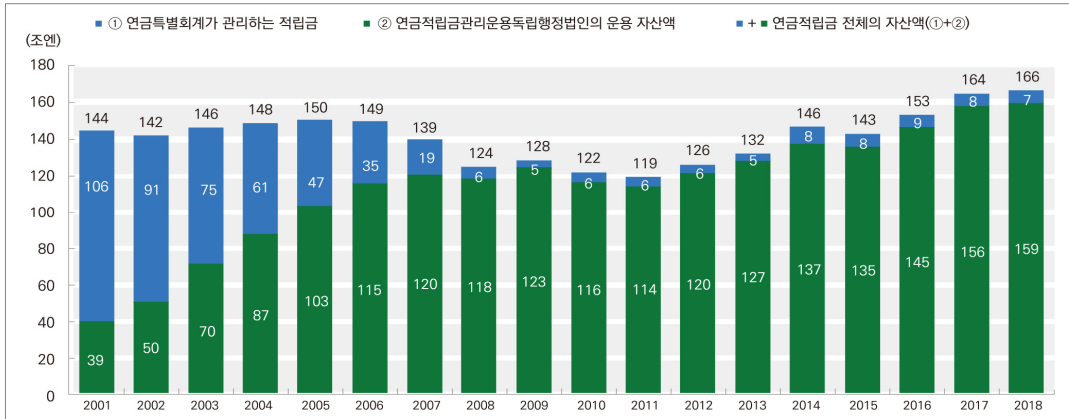
연금적립금의 관리와 운용은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이라는 독립행정법인⁵⁾과 연금특별회계가 수행하고 있다. 연금자산의 시장 운용이 시작된 것은 2001년이며, GPIF에 의한 운용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GPIF에 의한 운용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연금의 관리와 운영 책임을 구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GPIF는 이사장을 비롯한 자금의 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위에 고도의 금융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등용하고, 이사장이 승인한 운용방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다. 해당 운용방침과 운용상황을 운용위원회가 심의하고 감독하는데, 현재는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후생연금보험법」 제79의3에 근거하여 운용의 대부분을 GPIF가 수행한다. 현재 GPIF가 159조엔, 연금특별회계가 7조엔을 운용하고 있다.

4) 단, 사립학교교직원연의 연금보험료가 18.3%가 되는 것은 2027년으로 2020년 현재는 아직 17% 정도임

5) 독립행정법인(獨立行政法人): 일본의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국민 생활 및 사회경제의 안정 등 공공의 견지에서 확실히 실시될 필요가 있는 사무 및 사업 가운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민간 주체에 맡길 때에는 반드시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하나의 주체에 독점하여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행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함

〈일본 연금적립금 운용 현황〉



출처: GPIF website, https://www.gpif.go.jp/gpif/faq/faq_01.html

3) 재정검증

2004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적어도 5년에 한 번 보험료와 국고부담액 및 법률에 의한 연금급여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현황과 재정균형 기간 등에 대한 전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재정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2019년 8월에 공표된 재정검증 결과는 2019년부터 약 100년간의 수지, 소득대체율 및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인구 전체와 경제상황 등을 낙관적인 상황과 비관적인 상황 등으로 구분하여 케이스별로 전망하였다.

2019년 재정검증 결과 현재 실수령 월액 35.7만엔 세대⁶⁾의 연금급여 수준은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을 포함하여 월 22.0만엔⁷⁾으로 소득대체율은 61.7%인 것으로 나타나, 2014년 62.7%보다 감소하였다. 재정검증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점점 하락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50%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다. 공적연금 회계제도

1) 특별회계 재무서류 작성기준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재정상태는 회계상 연금특별회계에 공시된다. 일본에는 일반회계 외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특별회계가 있으며, 현재 특별회계는 17개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6) 남편 40년 근속, 부인 전업주부인 세대를 가정함
7) 기초연금이 각각 6.5만엔, 후생연금이 9만엔임

특별회계와 후생보험특별회계가 각각 존재하고 있었지만, 2007년 연금특별회계로 통합되었다. 참고로 국민연금특별회계는 1961년에, 후생보험특별회계는 1944년에 설치되었다. 연금특별회계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이외의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계정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 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기초연금계정, 국민연금계정 및 후생연금계정이 있으며 각각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징수 업무 등에 관한 사무비용 등은 업무계정으로 계리되고 있다.

연금특별회계의 정보공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다른 특별회계와 동일하게 현금주의 예산·결산정보였다. 2000년대 이후 국가에서도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회계기준 설정의 필요성도 인식되었다. 재무서류 작성기준⁸⁾은 작성 대상에 따라 ① 부처별, ② 일반회계부처별, ③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1998년도 결산부터 시작된 국가대차대조표(시안)의 작성, 1999년도 결산부터 시작된 특별회계재무제표의 작성을 거쳐, 부처별 재무서류의 작성에 이르렀다. 2002년도 결산에서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대차대조표, 업무비용계산서 등의 부처별 재무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연결한 국가재무서류도 2003년도 결산부터 작성하였다.

특별회계 재무서류 작성기준은 '기업회계의 관행'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자산계상과 총당금, 감가상각 등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 항목에 대한 국가의 목적과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PDF파일 35페이지 정도로 상세한 회계처리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IPSAS나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간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회계 재무제표로 시작한 국가의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세입세출결산을 기본으로 총당금과 감가상각 등 발생주의 특유의 항목을 조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또한 출납정리기간 등 국가 특유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수정하지 않고 재무서류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같은 상세한 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연금특별회계에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재무서류는 다음과 같다.

- 대차대조표
- 업무비용계산서(비용만의 집계표이며, 수익은 계상되지 않음)
- 자산·부채차액명세서(자산·부채차액의 증감 원인을 나타냄)
- 구분별수지계산서(세입세출결산을 기반으로 기업회계의 현금흐름표에 준하여 수지를 구분하여 표시)
- 부속명세서

8) 재무서류 작성기준(財務書類の作成基準): 발생주의 기준 결산보고서의 의미를 가짐

2) 발생주의 회계의 법정화

일본의 예산과 결산은 2020년 현재에도 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예산·결산제도를 발생주의로 전환할 예정은 없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도입 전후에도 변화하지 않는다.) 연금특별회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성립 이래 매년 공표되고 있다.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정보는 후술하는 대로 국회에 보고 되는데 ‘승인’을 거칠 필요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예산·결산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를 보충하는 정도의 위상을 갖는다. 상기 웹사이트에서도 예산·결산 정보가 먼저 표시 되고 그다음에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정보가 공시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 등과 발생주의 회계의 관계는 한정적이다.

2007년 「특별회계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가 법률에 명시되었다(「특별회계 관련 법률」 제19조). 참고로 법 시행 이전에는 특별회계마다 법률이나 규칙이 별개로 정해져 있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작성·공시되고 있었다. 법정화에 따라 회계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재무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특별회계 관련 법률」 제19조). 그러나 예산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국회에 ‘제출’될 뿐이지 특별히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발생주의에 근거한 특별회계 재무서류의 ‘검사’는 (기업회계와 같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보증형 감사가 아님에 주의가 필요하다. 회계감사원에 의한 검사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정리해 국회에 보고되는데, 그때 재무서류 전체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은 내고 있지 않다.

또한, 법정화 이후 연금특별회계에 대해 특별회계 재무서류의 수치 오류 등은 회계감사원에서 지적하지 않는다. 연금제도에 대해 특히 국민의 관심이 높음에 따라 회계감사원은 최근 ‘연금특별회계 및 연금적립금운용독립행정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연금적립금의 상황 등에 대하여’라는 형태로 국회의 조사보고를 수행하고 있다. (특별회계 재무서류 이외의) 부처별 재무서류 또는 국가 재무서류는 재무부가 취합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작성과 공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예정은 없으며, 회계감사원 등의 검사도 일부를 제외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별회계 재무서류는 각 부처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연금특별회계는 후생노동성이 작성 주체가 된다. 실제로 각 부처의 인원이 제한된다거나, 기업회계에 기초한 재무서류의 작성 관련 지식을 가진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재무서류의 작성을 회계사무소 등에 위탁하는 사례도 많다.

3) 발생주의에 기초한 회계정보

연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 중에는 기초연금계정, 국민연금계정 및 후생연금계정의 재무서류가 각각 존재한다. 규모로는 후생연금계정이 압도적으로 크고, 금액 외 항목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후생연금계정을 선택하여 서술한다.

후생연금계정에서는 개별재무제표 외 연금계정과 출자금의 GPIF를 연결한 연결대차대조표 모두 공시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회계에서도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가 공시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특별회계 재무서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후생연금계정의 개별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후생연금 계정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엔)

	전회계연도 (2018.3.31.)	본회계연도 (2019.3.31.)		전회계연도 (2018.3.31.)	본회계연도 (2019.3.31.)
<자산 부분>			<부채 부분>		
현금·예금	7,488,109	6,896,364	미지급금	3,891,795	3,891,359
미수금	69,292	107,271	공적연금예치금	112,324,386	112,861,192
미수수익	44	36	타회계전입미결금	3,137,855	3,238,092
미수보험료	2,595,182	2,639,046			
타회계전입미수금	4,456,260	4,505,923			
운용기탁금	104,432,050	105,629,511			
대손충당금	△240,895	△246,458			
유형고정자산	148	120			
고정재산 (공공용재산 제외)	148	120			
토지	135	110			
임목죽	0	0			
건물	12	9			
공작물	0	0			
물품	0	0			
출자금	744,799	655,420			
			부채 합계	119,354,037	119,990,644
			<자산·부채 합계 차액 부분>		
			자산·부채 합계 차액	190,956	196,590
자산 합계	119,544,993	120,187,235	부채 및 자산·부채 차액 합계	119,544,993	120,187,235

출처: Ryota Kaneko, 「Overview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 Japan」

차변(자산부분)의 8할 이상이 운용기탁금으로 약 105.6조엔이며, 대변(부채·순자산)의 9할 이상이 공적연금예치금(부채)으로 약 112.9조엔이다.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이 거의 동일하다.

후생연금계정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운용기탁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대신 유가증권 약 159.2조엔이 계상되어 있으며, 후생연금계정의 연결 총자산의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금특별회계에서 GPIF에 기탁한 운용기탁금의 대부분을 GPIF에서 유가증권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채의 공적연금예치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치금이므로 개별과 연결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계상된다.

개별대차대조표상 운용기탁금과 연결대차대조표상 유가증권에 50조엔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GPIF 운용액 159조엔에는 약 9조엔의 국민연금 기탁분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즉 후생연금의 기탁분은 약 150조엔이다. 기초연금의 운용기탁금 약 7조엔에 대응하는 유가증권 약 9조엔이 계상되어 있다. 연결재무제표상 GPIF는 후생연금계정에 모두 연결되므로 약 9조엔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GPIF의 유가증권은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유가증권 중 후생연금 기탁분은 약 150조엔이므로 차액 45조엔은 당초 GPIF에 출연한 운용기탁금과 운용재산 평가액과의 차액이며, 기탁 시점부터 2019년 3월 말까지의 운용수익에 해당한다.

〈후생연금 계정 연결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전회계연도 (2018.3.31.)	본회계연도 (2019.3.31.)		전회계연도 (2018.3.31.)	본회계연도 (2019.3.31.)
<자산 부분>			<부채 부분>		
현금·예금	7,541,874	6,930,960	미지급금	3,929,373	3,916,445
유가증권	156,409,859	159,239,460	미지급비용	302	256
미수금	70,696	108,238	상여충당금	172	207
미수수익	696	587	운용기탁금	7,032,880	7,063,706
미수보험료	2,595,182	2,639,046	공적연금예치금	112,324,386	112,861,192
선급비용	0	0	퇴직급여충당금	1,199	1,244
대여금	508,067	428,748	타회계전입미결금	3,137,855	3,238,092
타회계전입미수금	4,456,260	4,505,923	기타 채권 등	643	533
기타 채권 등	1	2			
대손충당금	△243,631	△248,357			
유형고정자산	737	574	부채 합계	126,426,813	127,081,678
고정자산 (공공용재산 제외)	498	442			
토지	135	110	<자산·부채 합계 차액 부분>		
임목죽	0	0	자산·부채 합계 차액	45,104,042	46,720,222
건물	361	331	(중 타 회계 등으로부터의 출자)	(30,202)	(25,090)
공작물	0	0			
물품등	239	131	부채 및 자산·부채 차액 합계	171,530,855	173,801,901
무형고정자산	398	343			
출자금	190,708	196,371			
자산 합계	171,530,855	173,801,901			

출처: Ryota Kaneko, 「Overview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 Japan」

후생연금계정의 연결업무비용계산서에서 ‘후생연금급부비’는 실제 국민에 대한 후생연금의 지급을 나타낸다. 또한, 국가공무원 등의 연금급부업무는 공제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등교부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연금지급이다. 업무비용계산서는 비용만을 나타내는 서류이며, 보험료수입이나 공적연금예치금의 변동은 자산·차액증감계산서에 표시된다.

〈후생연금 계정 연결업무비용계산서〉

(단위: 백만엔)

	전회계연도 (2017.4.1.~ 2018.3.31.)	본회계연도 (2018.4.1.~ 2019.3.31.)
인건비	1,436	1,667
상여충당금전입액	172	207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05	154
후생연금급부비	23,578,037	23,682,636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등교부금	4,752,414	4,696,281
보조금등	123,128	121,405
기초연금계정으로의 전입	17,977,882	18,797,044
업무계정으로의 전입	124,428	168,445
지급조정급 전입	1,687	2,001
기타 경비	73,919	52,161
감가상각비	304	263
대손충당금전입액	32,685	34,758
이자비용	0	0
자산처분손익	19	27
본년도 업무비용 합계	46,666,222	47,557,045

출처: Ryota Kaneko, 「Overview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 Japan」

4) 공적연금예치금

후생연금계정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적연금예치금’은 특별회계 재무서류 작성기준 제2장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은 과거 기간에 대응하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 중 적립금으로 충당될 부분, 즉 재정재계산의 각 연도 말의 소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적연금예치금’으로 계상한다. 또한, 공적연금의 적립방법, 재정재계산의 각 연도의 소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적립금의

차액의 발생 원인, 회계처리 및 과거 기간에 대응되는 미래연금급여의 현재가치 금액과 이에 대한 재원의 예상액, 산출 근거 등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한다.

또한 같은 기준 제6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에 대해 그 재정방식, 공적연금예치금에 대응하는 자산의 내역, 재정검증(최초의 재정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재정재계산)의 재정전망에서의 각 연도 말 적립금액 및 실적과의 차액의 발생원인, 회계처리, 과거기간에 대응하는 미래급여 현재가치액과 이에 대응하는 재원의 예상액, 산출근거 및 기타 참고가 될 사항

결국 공적연금예치금은 재정검증의 재정전망상 적립금액은 적어도 5년에 한 번씩 실적을 근거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미래 연금급여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자산에서 미지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한 방법이다. 아울러 공적연금예치금의 매년 변동액은 자산·부채차액증감계산서에서 ‘공적연금예치금의변동에따른증감’으로 계상한다. 또한 공적연금 관련 미수보험료, 타 회계 전입 미수금 및 타 회계 전입 미결제 등은 대차대조표에서 독립적으로 계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부 미지급금, 미수금 등을 제외하면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는 연금적립금을 ‘공적연금예치금’으로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특별회계의 자산 합계와 부채 합계의 차액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식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공공회계에서 공적연금부채의 취급은 어려운 문제로, 외국에서도 공적연금급여부채에 대해서 이것을 계상하지 않으면 완전한 대차대조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미래 예측에 따라 변동 폭이 큰 거액의 부채를 계상하는 것이 회계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손상한다는 주장이 있어 큰 논쟁이 계속됐다.

일본에서도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특별회계 재무서류 작성 논의에서도 다음의 두 가지 개념이 검토되었다.

- (1) 일본의 공적연금은 적립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과적 요소가 강한 재정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그해의 연금급여는 그해의 수입(보험료)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과 차이가 없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는 개념

(2) 공적연금은 보험료 납부에 따라 연금급여를 지급한다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험료 납부 때문에 제도의 운영자인 국가에 연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과거 기간에 대응하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때 향후 급여 전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방식과 미래 연금급여의 재원이 구분되므로 적립금 부분을 제외하고 국고부담분만을 부채로 인식하는 방식

결과적으로 2002년의 재정제도등심의회 회의록을 통해 (1)의 개념이 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논의는 기준 본문이 아닌 보론에 기재되어 있으나, 제한적으로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체 부과방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매기 가입자의 보험료가 연금급여에 충당되는 것이고 공적 연금에 관한 채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한편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은 장래의 연금급여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현행 부과방식하에서는 불확실한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국가의 연금지급의무 발생은 보험료의 납입 시가 아니라 국민의 수급자격 확정 시이며, 수급자격이 확정된 국민에게 문제없이 연금이 지급되기만 한다면 국가의 장기적인 부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 연금제도 회계처리 요약

- 1층 기초연금과 2층 후생연금(직역연금)의 회계처리 동일
- 2층 후생연금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 근로자 모두가 포함되며,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로 인식
-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납부한 기초연금·후생연금 보험료 중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는 연금적립금을 미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보아 부채(공적연금예치금)로 인식
- 국가회계와 차이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간주하여 미지급금 외 부채 인식 없음
(공무원연금) 고용에 따른 대가로 보아 미래 연금급여지급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라. 결론 및 시사점

1)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금제도

일본의 연금제도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그 시작은 유사하였으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상이해지고 있다. 민간 영역인 3층을 제외하고 공적 영역인 1, 2층을 비교하였을 때 1층을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2층을 직역연금인 후생연금(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구성된 것은 유사하나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1층 기초연금은 일본은 보험료를 납부하고(후생연금 납부자는 면제), 1/2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일본은 기초연금을 국민 전원이 수급받지만 우리나라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 2층 직역연금은 일본은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 등 모든 가입자가 직종과 관계없이 일원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더불어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수급받는 자는 기초연금 수급에 제한을 받는 규정도 존재한다. 또한 1985년 개정에 따라 기초연금의 범위를 넓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설하였는데,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20만원으로 월 5.5만엔 수준의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비중이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금제도 비교〉

구분	계층	일본		우리나라	
		민간 근로자	공무원 등	민간 근로자	공무원 등
공적연금	1층	기초연금(전 국민)		기초연금 (하위 70%)	공무원연금 등
	2층	후생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3층	보험회사, 은행 등			

2) 우리나라와 일본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국가에 도입되는 부분에는 공통점이 많이 발견된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특별회계(우리나라는 기업특별회계와 기금)를 중심으로 발생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과 세입세출결산을 기본으로 발생주의 항목을 조정하여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

등이 그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2009년 「국가회계법」 제정 등을 통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 작성 등이 법제화된 것에 비해 일본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발생주의 재무정보는 국가의 공식 서류가 아닌 참고 정보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금특별회계의 재무정보도 특별회계임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기는 하지만 발생주의 정보가 국회 또는 국민의 관심을 받는 예는 없으며, 연금과 관련된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보에 국민의 관심이 크고, 이러한 정보는 발생주의 재무 정보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계상에 따라 연금에 대한 관심이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을 촉발하는 한 축이 된 것은 사실이나, 연금충당부채 자체가 연금재정의 건전성이나 장기재정의 전망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한 고민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시사점

일본이 공무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은 연금제도가 공무원뿐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연금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⁹⁾ 이는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프랑스와 유사한 시각으로, 연금제도는 다른 복지프로그램과 차이가 없고 국가에 연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의 수급자격의 확정 시점이며, 국민에게 문제없이 연금이 지급되기만 한다면 국가의 장기적 관점에서 부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수급자, 가입자 비율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수급자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미래 연금급여에 충당하는 것이 확실한 적립금을 ‘공적연금예치금(부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공적연금 회계처리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회계처리는 적정한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일본의 후생연금과 유사하게 사회보장제도로 미래의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말 기준 736.8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등을 제거하고 약 600조원 정도가 국가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관련 예치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수행하지 않는다.

9) 2015년 공무원연금이 후생연금과 통합되기 이전에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함

이는 현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이며, IPSAS 42 Social Benefits 등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이기는 하나, 국민연금과 관련된 적립금은 국민연금급여 지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재정상태표 표시방식 등 회계처리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일본 외에는 비교 대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¹⁰⁾ 국제표준도 중요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제도의 변경은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이 높고,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령을 살펴보면 202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은 18%를 납입하면 소득대체율이 51%, 국민연금은 9%를 납입하면 소득대체율이 30% 정도로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다. 물론 소급 적용되지 않는 문제에 따른 기 수급 중인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금제도가 오래된 공무원연금의 수급자가 더 많고, 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국가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논란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모든 직역연금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제도를 개편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이러한 제도의 변경이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기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 연금 회계처리지침은 단순히 연금을 공무원·군인과 국민·사학으로 구분하고 ‘공무원·군인은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고(문단4), 국민·사학은 연금미지급금을 연금부채로 인식한다(문단35)’라고 서술할 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지침 문단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때 제도가 통합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공무원과 군인은 근로의 대가로 확정급여형 연금을 제공하여 그 부분을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지침을 정비하고, 국민연금은 근로와 같은 교환거래가 아닌 사회보장제도로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하는 등 현재의 연금 회계처리지침을 보다 정교화하여 연금 제도가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적립금 737조원은 일본의 공적연금펀드 166조엔(약 1,850조원), 노르웨이 국부펀드 약 1,447조원에 이은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연금금 규모임

2 코로나19 관련 회계처리: IPSASB 방향 제시

본 뉴스레터는 2020년 4월에 IPSASB 사무국이 발표한 “COVID-19: Relevant IPSASB Accounting Guidance”를 요약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재정지출의 회계처리 및 관련 IPSAS 기준을 Q&A 방식으로 소개한 자료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IPSAS와 회계처리 해석을 추가하였다.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psasb.org/publications/covid-19-relevant-ipsasb-accounting-guidance>

가. 배경

IPSASB 사무국은 코로나19 관련 각국 대응에 대한 회계처리 시 통찰력을 주고, 적용 가능한 IPSAS 및 기타 IPSASB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안내서(Guidance)를 발표하였다. 다만 이 안내서는 IPSASB의 권위적인 지침이 아니며, 현행 IPSAS의 요구사항을 수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무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국가별로 개입 성격과 규모, 이에 따른 장기적 영향이 상이하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중대한 규모의 재정개입(fiscal intervention)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발생주의 재무보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자원 사용의 투명성을 개선하며, 시민들이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차대조표 영향을 해결하는 데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많은 공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발생주의 채택과 실행에 대한 추진력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주요 내용

Q1) 코로나19 대응 정부개입(government interventions) 유형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에서 예외인 국가는 없다. 각국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으며, 팬데믹(pandemic)이 지속될수록 경제적 개입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개입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유형을 띠고 있다.

- **정부직접지출(direct government expenditure)**: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국민 지원, 검사 및 보호도구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억제, 생산 및 공급 과정의 유지, 정부방침 홍보비용 등
- **개인지원(support for individuals)**: 소득보장 지원, 실업급여, 국세납부유예, 분납세액 연기 등 사회보장급여 접근성 제고
- **기업 및 기타 공공부문실체 지원(support for businesses and other public sector entities)**: 보조금, 대여금, 지분투자, 부실자산구매, 세금경감 등
- **금융제도 지원(support for financial systems)**: 이자율 인하, 국채 및 기타 정부보증증권 매입 등의 화폐정책 상품

코로나19가 국가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신 재무정보는 정부개입에 투입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Q2) 정부직접지출 회계처리에 적합한 IPSAS

IPSAS 19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개입에 대해 충당부채로 인식할지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며, 2020년 1월 집합적·개별적 서비스의 충당부채 인식 여부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국민을 지원하는 것과 사회 전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개입은 집합적·개별적 서비스에 포함된다.

〈회계처리 해석〉

■ IPSAS 19

• (용어의 정의)

- **집합적 서비스(Collective Services)**: 국가가 사회 전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방, 거리조명 등을 말한다.
- **개별적 서비스(Individual Services)**: 국가가 사회 전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로 개인과 가계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보편적 교육,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 (충당부채 인식 여부)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IPSAS 19호는 실제의 지속적인 활동을 미래에 계속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집합적·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교환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합적·개별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직접지출의 경우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집합적·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교환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정부직접지출의 경우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재정상태표의 영향은 없으며, 재정운영표상의 비용 증가로 표시된다.

Q3) 개인지원 회계처리에 적합한 IPSAS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직자, 무급휴직자 및 재제로 인해 영업활동이 중단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개입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IPSAS는 IPSAS 42, '사회보장급여',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IPSAS 39, '종업원급여', ED 72, '이전비용' 등이 있다.

- ◆ IPSAS 42와 IPSAS 19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개인적 지원과 관련된다.
 -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가계에 제공된 현금이전 및 기타 급여
 - 사회 전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집합적·개별적 서비스(Q2 참고)
 -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수준 보장과 같은 정부 혜택의 증가
- ◆ IPSAS 39는 공공부문실체에 고용된 근로자(the employees of public sector entities)에게 지급된 병가 및 해고보상금(redundancy payments) 회계처리에 적용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시장 상황(negative market conditions)은 종업원급여제도의 사외적립자산 및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재측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 ED 72는 아직 최종 확정된 기준서는 아니나, IPSASB가 발표한 공공부문 이전비용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공개초안이다. 이전비용은 세금 이외의 비용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다른 실체에 재화, 용역 또는 자산을 제공하는 보조비 등을 말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개인, 기업 또는 기타 정부기관으로 이전한 자원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처리 해석〉

■ IPSAS 42

사회보장급여란 “수급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가계에게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요구(the need of society)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이전”으로 정의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정의를 충족하는 현금지원일 경우, 정부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개인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 시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보고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한 차기급여에 대해 부채를 인식한다(문단10).

다만, 코로나19 지원금의 경우 해당 연도 내 일시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기급여로 인한 부채인식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IPSAS 19) 국가의 지속적인 활동을 미래에 계속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비교환비용을 인식한다(Q2 참고).

■ (IPSAS 39)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등(the employees of public sector entities)에게 지급된 병가 및 해고보상금은 단기종업원급여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시장 상황은 확정급여부채(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고려되는 보험수리가정(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퇴직률,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측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확정급여부채의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적립자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순부채의 경우 그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 (ED 72)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이전비용(보조비 등)은 ED 72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지급 시 바로 비용으로 처리되어 왔다. ED 72는 이전비용에 대해 이전수령자(transfer recipient)에게 수행의무를 부담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인식원칙을 달리 한다. 이전수령자에게 수행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5단계로 구성된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을 적용하여 비용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원의 유출 시점과 현재의무의 발생 시점 중 이른 시기에 인식한다. 즉, 마스크를 생산하고 이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조건(수행의무)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마스크 생산 및 보급 현황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며 수행의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비용인식을 이연(선급금(자산)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Q4) 기업 및 기타 공공부문실체 지원 회계처리에 적합한 IPSAS

기업 및 공공부문실체를 지원하는 정부개입에 대해 유형별로 적합한 IPSAS는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IPSAS 34, ‘별도재무제표’, IPSAS 35, ‘연결재무제표’, IPSAS 36 ‘관계회사 투자’, IPSAS 37, ‘공동계획’, IPSAS 38, ‘그 밖의 실체의 내부 공개’ 등이 있으며, 관련 IPSASB 발간 문서로 「Q&A: 공기업 및 IPSAS 기반 연결재무제표(State Owned Enterprises and IPSAS-bas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¹¹⁾가 있다.

11) <https://www.ipsasb.org/publications/ipsasb-staff-questions-and-answers-state-owned-enterprises>

- ◆ IPSAS 19는 코로나19의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경제적 개입의 충당부채 인식 관련 지침 제공한다.
- ◆ ED 71은 아직 최종 확정된 기준서는 아니나, IPSA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이다. 코로나19 지원 사업은 직접적인 대가 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ED 71에 따라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다. 기존 IPSAS 23, ‘비교환 수익(세금 및 이전)’뿐만 아니라 ED 71에 따른 수익인식 회계처리가 이를 지급하는 공공부문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 IPSAS 34에서 IPSAS 38 등은 코로나19 개입으로 변경되는 다른 회계실체와의 이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재원을 분배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새로 정부기관을 설립하거나, 정부가 지분투자를 하는 등 다른 실체에 대한 투자로 인해 지배력이 변경된 경우를 평가할 수 있다. 국유기업 및 IPSAS 기반 연결재무제표 Q&A는 정부 지원 범위의 특성으로 민간 회사가 국유화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회계처리 해석〉

- (IPSAS 19) 실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미래에 계속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비교환비용을 인식한다(Q2 참고).
- (ED 71)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은 주로 현행의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수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수익거래에 적용한다. 이러한 수익거래의 경우 수취한 자원에 대해 현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현재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와 측정방법을 달리 한다. 주로 자원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정보보다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이외의 공공부문 실체에서 이러한 형태의 수익거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Q5) 금융제도지원 회계처리에 적합한 IPSAS

국가부채위기(Sovereign Debt Crisis) 때와 마찬가지로 종종 중앙은행과 협력하는 정부들은 자국의 경제지원뿐 아니라 상당히 증가한 자원조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성이 높은 IPSAS는 IPSAS 28, ‘금융상품 표시’, IPSAS 2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PSAS 30, ‘금융상품 공시’, IPSAS 41, ‘금융상품’ 등이 있고, 관련 IPSASB 발간 문서로 「‘Q&A: IPSAS’에 따른 국가부채 재조정 회계처리(Accounting for Sovereign Debt Restructurings Under IPSAS)」¹²⁾가 있다.

12) <https://www.ipsasb.org/publications/updated-qa-accounting-sovereign-debt-restructurings-under-ipsas>

- ◆ IPSAS 28, 29, 30, 41은 부정적인 재무환경으로 인해 회수가능성이 악화된 수취채권이나 대여금 등 금융자산의 손상의 인식과 측정 관련 규정을 제공한다.

〈회계처리 해석〉

- (IPSAS 29 등) 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재무환경으로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손상되었고 해당 손상에 대해 IPSAS 29에서 규정하는 손상사건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고정된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과 고정된 만기가 없는 금융상품 모두 순자산 또는 자본에 직접 인식한 누적 손실을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순자산 또는 자본에서 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인식한다.

Q6) Q2~Q5에서 다른 특정 유형의 정부개입 이외에 재무제표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IPSAS 정확히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국가별 정부개입 형태에 따라 적합한 IPSAS 기준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 및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를 회계처리할 경우 IPSAS 1, ‘재무제표의 표시’, IPSAS 14, ‘보고일 이후의 사건’, IPSAS 16, ‘투자부동산’,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 IPSAS 26, ‘현금창출 자산의 손상’ 등이 핵심이 될 것이다. 관련 IPSASB 발간 문서로 「Q&A: 재무제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의 적용(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Materiality to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¹³⁾이 있다.

- ◆ IPSAS 1은 회계실체의 주요 공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관련 재무적 개입과 관련된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추정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계속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 ◆ IPSAS 14는 보고일 이후 재무제표 발생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인식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개입이 보고일 이후에 집행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재무제표 본문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구분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 ◆ IPSAS 16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capital appreciation)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할 때 적용될 수 있다.
- ◆ IPSAS 21과 IPSAS 26은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 등의 조치로 인해 폐쇄되거나 가동 중단으로 유희상태의 자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13) <https://www.ipsasb.org/publications/ipsasb-staff-questions-and-answers-materiality>

〈회계처리 해석〉

-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 인식 시, **손상차손으로 추정된 금액이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모두 제거한다.** 이는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현금창출자산 손상 인식과 상이한 점이다. 더 나아가, 자산의 유용성이 저하되어 사용이 불가하고 IPSAS 19(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의해 요구될 경우 해체비용을 인식한다.
- (IPSAS 26) 투자부동산과 같은 현금창출자산이 자산 손상요건에 부합하고, 해당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가액으로 감소시킨다.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하며, 손상차손은 즉시 손익으로 인식한다.

Q7) 재무제표보다 더 광범위한 보고에 적합한 IPSAS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또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와 기타 공공부문실체의 공공서비스의 제공 목적이 변화할 것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서비스 제공체계가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지침으로는 RPG 3(실무적용서: 서비스성과보고 Reporting Service Performance Information)이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회계실체의 재정상태 및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RPG 2(실무적용서: 결산개요 Financial Statement Discussion and Analysis)를 고려해야 한다.

- ◆ **RPG 3**는 공공서비스 목표를 보고하기 위한 원칙 중심 프레임워크와 그러한 서비스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제공한다. 보고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변경되는 상황을 제시하며, 실제의 상황에 맞게 보고의 형식 및 성과평가지표의 재조정을 허용한다.
- ◆ **RPG 2**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회계실의 재정상태, 재정운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재무제표 항목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 위험과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 보고기간 사이에 변경 추이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Q8) 코로나19의 장기적 영향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IPSAS

재무제표가 재무보고 건전성의 주춧돌 역할을 하지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실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실체는 설정된 시계(pre-determined time horizon) 대신 현 정책의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유출 및 유입과 관련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지침으로는 **RPG 1(실무적용서: 장기재정지속 가능성 Reporting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an Entity's Finances)**이 있다.

- ◆ RPG 1은 장기적 예측의 수집과 공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므로 코로나19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투명하게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고일 현재의 정책 및 결정사항이 미래 유입·유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일반목적재무제표(재무제표)상의 정보를 보완한다. 이러한 보고의 목표는 정해진 가정에 따라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실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관한 징후를 제공한다.

Q9)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시장(non-market)적 조건의 대여금 회계처리에 적합한 IPSAS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비시장적 조건의 대여금을 투입했다. 대여금의 규모는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며, 관련 IPSAS는 IPSAS 2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PSAS 41, '금융상품', IPSAS 23, '비교환거래수익(조세, 이전)' 등이 있다.

- ◆ IPSAS 29와 IPSAS 41은 비시장적 조건으로 투입된 대여금인 공공부문 특정 할인대여금(Concessionary loans)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 IPSAS 23은 할인대여금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비교환거래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의해 거래가격이 대여금의 공정가치와 상이한 할인대여금의 경우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대여금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분할상환비용으로 후속측정된다.
- ◆ IPSAS 41은 할인대여금과 채무면제(waivers of debt)를 구분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비시장적 조건약정을 기존 대여금의 후속측정 또는 면제로 볼 것인지, 할인대여금을 최초측정으로 고려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처음부터 할인대여금은 비시장적 금리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채무면제는 시장조건에서 처음 부여된 기존 대출약정의 변경에서 비롯된다.

Q10)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의 손상은 언제 인식하고 손실은 얼마나 유의적인가? (관련 Q5)

이는 기존 IPSAS 2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과 최근에 발행된 IPSAS 41, '금융상품'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두 IPSAS 모두 강력한 손상 요구사항이 포함되나, 그 요구사항은 다르다.

- ◆ IPSAS 29: 실제 발생손실(incurring loss) 모델을 적용,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손상사건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만 손상을 인식하며, 다음의 손상사건을 포함한다.

- 발행자 또는 채무자의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
 - 계약 위반
 - 대여자의 보조(할인) 허용(The lender grants a concession)
 - 대출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최초 인식 후 해당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고 측정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자료(Observable data)가 있는 경우
- ◆ **IPSAS 41: 기대신용손실(expected loss) 모델 적용, 회계실체는 예상되는 손상을 인식해야 하며, 실제발생손실 모델과는 상이하게 손상을 발생시키는 사건을 구별하지 않는다.**

적용되는 기준과는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회계실체는 보유한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손상인식이 필요한지 평가해야 한다.

〈회계처리 해석〉

- (IPSAS 29와 IPSAS 41의 관계) IPSAS 41은 IPSAS 29를 대체하는 기준서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2022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IPSAS 41은 자산의 현금흐름의 특성과 보유 목적을 고려한 금융자산의 단일 분류 및 측정 모델을 적용하고, 손상검사 시 기대신용손실 모델을 적용하도록 하여 IPSAS 29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Q11) 코로나19 회계처리 관련 IPSAS와 IFRS의 차이점

대부분의 IPSAS는 현행 IFRS를 기반으로 IPSASB에서 발간한 ‘IASB 문서 검토 및 수정 절차(Process for Reviewing and Modifying IASB Documents¹⁴⁾)’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IFRS와 상이한 점은 IPSAS가 기준서에서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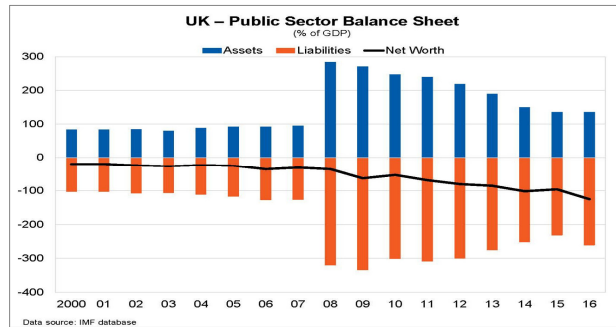
- 비현금창출 자산의 손상, 사회보장급여, 집합적·개별적 서비스 등의 이전 지침(Q2, Q3, Q6 참고)
- ED 71이 제시하는 공공부문의 수익이전에 대한 지침은 IAS 20의 회계처리와 상이함(Q4 참고)
- IPSAS 기반 할인대여금 회계처리(Q9 참고)

14) <https://www.ipsasb.org/publications/process-reviewing-and-modifying-iasb-documents>

다. 결론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 및 재무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IPSASB 사무국이 발행한 본 안내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출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IPSASB 의장 Ian Carruthers 역시, 최근 *Public Finance Focus*에 기고한 ‘회계 투명성은 코로나19 이후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돕는가(How Accounting Transparency Can Help With The Tough Decisions Head After COVID-19)’에서 발생주의 재무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출처: IMF data base; Ian Carruthers, 2020에서 재인용

그는 해당 기고문에서 “높은 품질의 재무보고만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다”고 말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영국 자산부채 비교 정보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영국은 은행위기 동안 정부는 금융부문의 상당 부분을 인수해야 했고, 이로 인해 대차대조표의 시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국가 재정의 현 주소를 온전히 나타내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양질의 재무보고는 정책 입안자가 현재와 향후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IMF가 최근 각국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인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라. 그러나 영수증은 챙겨라’를 되새겨 보며, “더 나아가 챙긴 영수증을 발생주의 재무보고 작성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하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더 크고 복잡하고 오래 지속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올바른 재정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산출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15) <https://www.publicfinancefocus.org/viewpoints/2020/04/how-accounting-transparency-can-help-tough-decisions-ahead-after-covid-19>

07

센터동향

1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이용 활성화방안」 중간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정보 활성화를 위해 우남세무회계컨설팅(연구책임자: 박성동)과 5월 21일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3개월(2020년 5~8월) 간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이용 활성화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가회계정보의 생산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방안 및 국가회계정보 개발방안을 마련하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의 방향 및 내용의 중간점검을 위해 중간보고회가 6월 24일(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중간보고회는 연구책임자인 박성동 대표의 보고에 이어 외부 토론자인 기획재정부의 장시열 사무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김완희 소장, 한소영 팀장 외 4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중간보고 시 인프라 강화방안으로 인적 역량 및 교육시스템 강화, 국가회계기준 정비, 중앙관서 재무제표 검토제도 등이 제시되었고, 국가회계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으로 정책결정과 연계한 정보개발, 회계정보의 품질 제고, 활용 가능한 정책 분야 발굴 등이 포함되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센터 역할의 중요성, 정보 수요자를 고려한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본 위탁연구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8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에 앞서 강사들의 강의 스킬 향상을 위한 「국가회계 전문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6월 23일 본원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행복연구소의 권서희 대표를 섭외하여 2시간 동안 ‘창의적 교수 설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센터를 비롯한 총 18명이 참석하였다.

본 세미나를 통해 창의적 교수법, 강사 이미지 연출 전략, 강의 스킬 향상을 위한 실전 전략 등의 다양한 강의 노하우가 전달되었으며, 특히 강의 진행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과 실무 기법들을 배울 수 있었다. 본 세미나를 통해 국가회계 전문교육 내부강사들의 강의 역량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회계 전문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6.23), 본원 8층 중회의실〉

3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중간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한국정부회계학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중간보고회가 2020년 3월 31일(화) 센터 중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중간보고회는 최연식 교수(경희대)와 조형태 교수(홍익대)의 연구보고에 이어 외부 교수인 박상연 교수(배재대)와 센터 실무진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연구진은 토론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토론 주요 내용 요약〉

- (박상연 교수, 배재대) 결산 담당자의 입장에서 결산 총평의 작성원칙보다 표준양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새롭게 적용하는 재정지표에 대하여 선정 근거, 의미 등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박윤진 팀장, 조세연) 보고서 활용을 위해 결산 총평을 최종 서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취업계수 등 연구진이 제시한 지표에 대해 지표의 의미 및 지표가 갖는 타당성 등의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문창오 부소장, 조세연) 현재 공기업 관리가 기획재정부의 출자관리과와 공공정책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다른 결산 숫자를 발표하는 등 한계가 있음. 결산서 개선을 위해서는 총괄재무제표 작성방식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김완희 소장, 조세연) 2018년 결산 총평을 샘플로 현재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개선된 결산 총평 양식을 대략적으로라도 보여주어야 보고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익률 관련 지표 등 준정부기관의 특성에 맞지 않는 지표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위탁과제 중간보고(3.31), 센터 중회의실〉

4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중간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연구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신뢰성 제고방안」 중간보고회가 2020년 6월 17일(수)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중간보고회는 기획재정부 강준희 출자관리과장, 강중호 사무관이 참석하였고 박윤진 재정통계팀장의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 이후 관련 회의가 이어졌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진은 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토론 주요 내용 요약〉

- (강중호 사무관, 기획재정부) 민간에 적용되는 회계제도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박윤진 팀장, 조세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수준에서는 회계교육 강화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외 회계제도 관련 규정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강준희 출자관리과장,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정책국 등 기획재정부 내 다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 수탁과제 중간보고(6.17),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의실〉

5 공공기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공기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기대효과 및 예상 이슈」 전문가 간담회를 2020년 5월 20일(수) 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삼정회계법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적용 사례와 도입 시 기대효과 및 예상 이슈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토론 주요 내용 요약〉

- (염기중 선임연구원, 조세연) 민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 (박상욱 상무, 삼정) 민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수용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면적 도입보다는 기관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가능성 및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박윤진 팀장, 조세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공기업을 시장형과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도입 가능성 및 실효성의 검토가 필요함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관련 세미나(5.20), 센터 중회의실〉

08

공지사항

1 뉴스레터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는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265(연구행정총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편 집**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 **발행인**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265(센터), <http://gafsc.kipf.re.kr>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20년 6월 30일 발행

